

인권에 관한 공식 선언과 그것을 실제로 존중하는 문제와의 사이에는 심각한 어긋남이 있다. 이론과 실제와의 뚜렷한 괴리(乖離)는, 인권이 정의와 평화를 보장하는 데에 많은 시련을 이겨낸 효과적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잘못 간주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빈번한 인권 침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침해를 조장(助長)하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날 인권 침해의 주요사례(主要事例)들은 정권(政權)의 형태에서 유래하는 바, 그 정권의 구조 자체가 비록 다소간에 변장(變裝)되어 있다 할지라도 폭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를 빚어 내게 된다. 이러한 폭력사태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오늘의 현실상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통치형태도 모든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사회적 및 개인적 권리에 대해 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억압형태의 하나는, 인간을 한갓 생산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소비경제, 즉 경제적 이득(利得)을 궁극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제에서 필요한 한가지 품목으로만 간주하는 통치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들과 특히 각국의 모든 정의·평화위원회는 자기 나라에서의 특수한 인권 침해 밑에 깔려 있는 원인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교회들과 정의·평화 위원회들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목적인 항의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寄與)하려면,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또한 존중될 수도 없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를 떠받치며 지배하고 있는 메카니즘을 철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회와 인권〉 88~90,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CP1.4

평화를 원하면 양심을 존중하라

● 대표적 사례 중심으로 본 '90년도 인권상황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적(私的)하거나 공적(公的)하거나를
막론하고 인간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봉사하며 온갖 사회적 내지 정치적
노예화를 거슬러 투쟁하고, 어떠한 정치
체제하에서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진력해야 한다. (사목현장 29항)

● “평화를 원하면, 양심을 존중하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제 24회 세계 평화의 날 (1991. 1. 1) 주제로 선정된 글이다.

차 래

서 문	2
제1부 하느님의 정의, 교회와 인권	4
제2부 오늘의 인권 현실과 사회 문제 - '90년도를 중심으로 -	
'90년도 인권관련 주요사건일지	16
생활환경파괴와 인권	30
한국농업·농민의 생존권	38
도시빈민의 주거권	52
1990년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60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74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84
교도소는 인권의 사각지대인가?	98
장기구금양심수, 어떤 사람들인가? -	108
동의대 5.3사건의 재조명	116
제3부 자료모음	134
1. '90년도 구속자 통계	
2. 성명서	

서문

1990년 한국 사회는 가히 위기의 시대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위기의 근원은 대내외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고 있다. 밖으로는 새로 운 세계 건설을 앞둔 세계사적 변화들이 전개되고 있고, 안으로는 사회 각계에서 독재·독점적 요소의 청산과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열망이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으나 한국의 정치권력은 이러한 혐의의 조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올 국내의 인권상황 또한 ‘위기의 상태’가 가중되어 왔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도덕성을 잃고 잇권에만 매달려 사회전반에 정치불신이 만연된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되어 나타났다. 즉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정치권력은 정치적 공백의 상태가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도 위기로 다가오자 사회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명분없는 구속과 탄압을 일삼아온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의 상태도 계속 심화되어 왔다. 전·월세비의 상승으로 인해 누울 자리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을 때에도, 고급 향락산업은 번창하고 골프장 건설은 무더기로 승인을 받고 있었다.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공평한 분배, 경제 정의가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가치관 상실과 도덕적 타락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끔찍한 범죄들이 연일 신문지상을 덮었다. 사소한 일로 인해 상대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모

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발생했다.

올 하반기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전쟁선포’(왜 그런 극한적 용어를 사용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은 더욱 커졌고, 마치 정부의 공언을 비웃듯 전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러한 도덕적 타락 현상과 인권유린 상황의 가장 큰 요인은 가진 자들의 횡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현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지배의 권한은 도덕적 질서에서 요구되고 하느님으로부터 전래하는 것이므로, 만일에 국가의 지배자들이 그러한 질서와 하느님의 의사에 반대되게 입법하거나 혹은 명령하는 경우에는, 입법도 아니고, 그런 권한은 국민들의 양심에 의무를 부가할 효력도 없으니 ‘사람들에게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하여야 하기’(사도 5, 29)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권력도 무너지고 수치스러운 모욕이 따를 것이다.”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28)

정치권력자들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하고 또한 통치를 위한 법률에 있어서도 역사적 현실에 맞는 법을 세워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공동선의 실현은 가능해질 것이다.

1990. 12. 9

인권주일에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 인권분과위원회

1부

하느님의 정의, 교회와 인권

I. 시작하는 말

지난달 하순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금년 가을의 정기 모임을 마치면서 정부에 대하여 정치범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교회의조차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논평·보도하였다.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시비는 국내외적으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면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독일(당시 서독) 바이에른 대통령을 예방하였을 때 독일 대통령은 외교관례를 크게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양심수와 정치적 수감자에 대하여 노태우 대통령을 질책하는 듯한 질문을 한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1990년 초에는 국제 사면위원회(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사항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6공화국에 들어 한국 정부는 또 다시 인권탄압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그들의 조직망과 활동체계를 통하여 한국정부 당국에 대하여 양심수와 정치적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몇달 동안이나 계속하여 대대적으로 벌인 일이 있다. 그뿐 아니라 금년 11월 유럽 공동체의 문화 수도인 아일랜드 그拉斯코 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정치적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 예술가 세 사람을 뽑아 그들의 고난과 꾹박을 소개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의 예술가 중에는 현재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화가 홍성담 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에는 양심수나 정치적 수감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1945년 이후의 역사는 인권탄압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른바 대규모 인권 탄압이 반복되어온 피흘림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피흘림의 역사를 막고, 피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벌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권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세우고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용기있게 밝히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II. 인권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 기본권인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존재와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적 인격주체라는 존엄한 지위를 누린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성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창세 1, 26-27). 즉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적 주체로서의 속성을 하느님과 함께 공유(類比的 共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목적 가치로서의 존엄한 지위를 누리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부분인 사랑과 봉사라는 측면에서 하느님과 인간은 비슷한 비중을 가진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예수께 던졌을 때 예수께서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지만,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가장 중요한 골자임을 분명히 일러주셨다(마태 22, 34-40, 마르 12, 28-34, 루가 10, 25-28). 이 복음은 하느님과 인간은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차이가 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신구약 성서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복음은 역사를 통하여 교회 안팎에서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과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임을 교회는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 <사목현장> 16, 17, 26, 67, 78, 91 등).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인권의 구체적 항목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 중 사목현장 <환희와 희망 (Gaudium et spes) 26>에 의하면 인간은 인격적 존엄성의 주체이며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종교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 주체라는 존엄한 위치에 걸맞는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영양섭취와 의복 및 주택을 가질 권리 를 누리며 생활수준과 가정구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명예와 교육 및 노동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누리며, 이러한 권리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의 구체적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과 인권에 관한 교회의 인식은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의 인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혹은 민족과 민족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

인류가 전쟁의 와중에 휩쓸려 암울하였던 1944년 성탄절에 즈음하여 교황 비오 12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설교에서 교회는 보다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할 사명을 지고 있다고 명백히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요한 23세는 1963년 교황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 입장과 가르침을 더욱 구체적이며 본격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회칙 <지상의 평화>(6~20)에서는 인권을 9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인간은 인격주체로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존

엄한 지위를 누리며[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모든 질서의 원칙이며, 이러한 지위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권리가 있다. ②인간의 존엄과 품위에 맞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 및 의료 등에 관한 권리[생존권적 기본권] ③각자의 자질과 원하는 바에 따라 교육, 예술, 학문 등과 같은 도덕적·문화적 가치에 접근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교육 표현 학문의 자유] ④양심과 내적 확신에 따라 신앙과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⑤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정생활이나 독신생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행복 추구권] ⑥누구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건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의 노임에 관한 권리[노동권] ⑦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회를 가지고 결사를 꾸릴 수 있는 권리[집회결사의 자유] ⑧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이주의 권리[주거이전의 자유] 그리고 끝으로 ⑨인간은 정치적·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 주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각종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 즉 이른바 천부적 권리임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에 관한 입장을 <노동현장>, <사목현장(환희와 희망)>, <교육현장>, <인간의 구원자>, <어머니와 교사>, <노동하는 인간> 등 많은 공식 문헌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되풀이하여 밝히고 있다.

III. 실정법상 인권의 구체적 내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사순절에 반포된 회칙 <인간의 구원자>(17)에서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들은 인류구원을 위한 궁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인권규약들이 더욱 발전하고 광범위하게 지켜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 인권관계 조약의 구체적 규정 등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일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에 관하여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실정법상 규범성이 인정되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기타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국제조약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하느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 어우러져 인간해방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역사적 섭리의 한 증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권관계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구체적 실체를 알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으로서 국제인권장전이 있다. 국제 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B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본규정] 그리고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 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그러한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금년에야 A협약과 B협약에 겨우 가입하였으며 그나마 완전히 가입한 것은 아니고 사상의 자유와 남녀평등 및 노동조합에 관한 조항 등 실제로 중요한 조항은 유보하였다. 그리고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기본규정과 고문 등의 방지에 관한 선언 등은 아직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오늘날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실질적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내용을 모두 밝힐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면서도 한국의 인권현황을 기능해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내용만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B협약 18조)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심의 자유는 다른 모든 인권의 원천적 바탕인 동시에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각종 실정법이 국제법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기 때문이다. B협약 18조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사상과 신념과 종교를 받아들일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혼자서나 혹은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다만 신념의 표현방식에는 사회 질서와 안녕 그리고 공중건강과 도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가 명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A협약 8조에 규정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문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군인과 경찰 그리고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제

한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아닌 예컨대 국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교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에 관한 제한은 반드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B협약 14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대체로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소위 불고지죄(不告知罪)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도 한 번 처벌받은 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어떤 종류의 다른 처벌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 처벌이 끝난 범죄행위를 근거로 범행의 우려가 있다 하여 형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격리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끝으로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 기본규정과 고문 및 모욕적 처우나 그러한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에 의하면 수감중에 수갑·쇠사슬·구속복 등 일체의 제재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33조), 수감자뿐 아니라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고문과 가혹 행위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독을 느낄 수 있는 처우와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범죄행위에 의해서도 범인의 인격적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며 다만 범행에 상응한 형벌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인권의 상존성(常存性)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정 폭력과 같은 흉악범이나 간첩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 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제도적 장치와 인권에 관한 규범적 인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기대수준 등이 한국의 인권사항을 비판하는 국제여론과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이며,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처럼 인권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된 역사적 및 구조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IV. 한국 인권문제의 본질과 배경

이 글의 서두에서 필자는 한국 근대사의 한 특징은 불행히도 괴물림에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1948년 남북 분단을 전후 한 민족사회의 발전에 따르는 고난의 단면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격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열쇠가 되리라 믿는다.

한(韓)민족사회의 근대화 과정은 두 가지 전향적 개혁이념이 뒤엉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조 말기에 있었던 일련의 서구 지향적 개혁이념과 그후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고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개혁이념이 그것이다. 이들 두 가지 전향적 개혁이념이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기 전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정치이념은 정치적 실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하로 잠복하여 1945년까지 민족사회 내부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미소 양대국의 한반도 분단정책은 그 전까지는 이념적 갈등 요인이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던 두 전향적 개혁이념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정치권력의 실체로 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48년 남북한에 각기 수립된 분단정부는 미소의 대결이라는 상황적 조건 아래 민족사회 내부의 대결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 대결의 상황적 계기는 비록 미소 군사정권의 한반도 분단정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민족사회 내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 한정되는 대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남한과 북한 각 사회의 내부구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쳐 대결의 논리는 전후 남북 사회의 내부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되었다.

남한 사회의 내재적 대결은 1948년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국군반란사건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 4·3사건 당시 어떤 이유에서든 당시 제주도 주민의 약 20%를 넘는 5만명 전후의 민족사회구성원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민족사회 내부의 대결논리가 민족적 자아부정으로까지 치닫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처럼 인간의 생명과 공동체의 연대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엄청난 반인간적·반민족적 비극인 대량학살을 딛고 건설된 정권이다.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양심수 혹은 정치적 수감자로 선포하고 그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례들은 예외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 인권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가 제일 먼저 서둘러 입법조치한 법률 중의 하나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다.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은 그 모범인 형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에 제정되었다. 그러니 어머니보다 먼저 자식이 태어난 셈이다. 그 후 국가보안법은 여러 번 개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제정되기도 했으나 현행 국가보안법의 근원은 여전히 1948년의 국가보안법에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공권력을 수단으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함으로써 정치권력 담당자들이 국민들을 권력의 수동적 객체로 묶어두기 위한 제도적 억압장치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사회의 반쪽인 북한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세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정권 담당자들이 그들을 북한과 관련시키기만 하면 그들을 정치과정과 모든 사회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민족사회의 분단구조 위에서 민족 간의 부분적 자아부정과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섬멸의 논리와 폭력을 규범화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극한적 대결논리를 규범화하기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반쪽을 범죄집단 즉 섬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영토적 범위는 사실상 남한에 국한되며 그 인적(人的) 적용범위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대결과 섬멸의 논리 즉 존재부정의 논리가 적용되는 대상도 자국 국민에 한정된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 역시 남한과 다를 바 없다. 즉 남북한 두 분단 정권은 각자의 정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사회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섬멸하는 탄압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로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여권 정치인의 방북 사례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비밀 외교권 주장 등이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분단구조 위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의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논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국 국민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단의 대결구조와 섬멸의 논리가 분단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의 수단으로 분단사회에 각기 내재화(內在化)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단과 대결의 논리는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국군반란사건, 지리산 등 빨치산 토벌, 보도연맹 학살사건, 5·16과 5·17군사변란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량살戮을 반공이라는 이념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폭력 그 자체를 긍정적 가치로 전환시켜 놓았으며, 그 결과 반공이란 이념의 옷으로 분장되기만 하면 모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이나 그 집행에 관한 비판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남한 정부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에게 도움이 되며 따라서 그것은 북한을 친양하고 고무하는 이적행위라는 역진행(逆進行)의 논리가 남북을 가릴 것 없이 분단사회를 지배하는 정치논리를 이루게 되었

다.

이와 같이 왜곡된 가치서열은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히 그 추진세력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급속히 보편화되었다. 경제성장은 분배문제, 자본의 과도집중, 생태계파괴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집권층에 대한 부분적인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담당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제성장을 의인화하여 선전한 결과 집권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인 폭력성까지도 정당화하였다. 달리 표현한다면 경제성장의 결과물 중의 상당한 부분은 정치적 가치서열을 전도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동원되었다.

우리는 위에서 한국 인권문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인권문제의 구조적 본질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그 첫째 과정은 경쟁관계나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거대상으로 규정하는 인식 자체가 굳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섬멸과 대결의 논리가 분단구조를 기초로 싹트기 시작하여 그 후 한국전쟁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고착되었다. 둘째 과정은 60년대의 경제성장과정과 함께 출발하는 단계로서 정치권력이 국민을 제거 대상과 이용 대상으로 분류하여 인간을 수단가치로 전락시켜 놓았다. 즉 군부 독재정권은 대내적으로는 군이라는 폭력장치를 이용한 억압과 대외적으로는 매판성 자본에 접근하기 위한 굴종적 자세라는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바탕을 경제성장에 둔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였다. 경제성장 이외의 모든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사람 역시 하나의 수단가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위에서 간단히 분석해본 바와 같이 한(韓)민족의 근대사는 분단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닥의 큰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닥의 줄기가 불행히도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인권문제가 대규모의 살륙으로 나타나고, 특히 통일과 이념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영역과 노동 영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배경이다.

V. 인권을 위한 한국 천주교회의 역할

이제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수행하였던 역사적 역할과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를 반성해보고 앞으로 인권신장을 위하여 한국 천주교가 취해야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맺을까 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2백년 역사는 후기 조선조 사회의 정신적 및 사회적 변혁의 움직임을 추동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 엄격하다 못해 반인간적이었던 남녀차별주의는 남녀가 함께 모여 한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행사를 주도하였던 초대 한국 천주교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뿐 아니라 양반과 상민 간의 엄격한 계급 구조를 초대 교회는 단호히 부정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였다. 즉 인간해방이라는 그리도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을 초대 교회는 괴를 훌리면서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선조들에 대하여 궁지를 가지고 그분들을 성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당시의 시대적 조류나 여건이나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체면이나 양반으로서의 권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의길로 진리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인권을 위한 선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 36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인간해방이라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그 전의 처절했던 순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해방이라는 역사의 당위적 사명에 역행하는 정치권력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소극적 경향을 취하였다. 그러한 성향은 특히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945년 식민지통치 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군정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대에는 한국 천주교회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 반공과 극단적인 인권부정(앞에서 말한 대량살육)이라는 갈등 사이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그 입장을 분명히 설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는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더욱 굳혀갔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인민군에 의하여 희생된 결과 교회는 인민군이나 북한사회 전체를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즉 해방되어야 할 주체로 보기보다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대적 경쟁자나 악마의 대변자쯤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전쟁피해를 내용으로 하는 많은 책자를 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 한몫 거들었으며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짓이 마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인 양 적극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 선전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사회주의에 관해서는 오로지 반론만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실천이라고 믿었을 정도였다. 즉 조선조 말기에서 1950년대까지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인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실천하거나 주장할 용기를 상실한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한국전쟁을 통한 피해의식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 가톨릭적 성격(범인류적 보편성)에 많은 훼손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인간해방의 사회적 차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예컨대 교도권을 가진 고위 성직자 중 몇몇 분들은 ‘양심에 입각한 병역의무 거부권’에 관한 교황 성화와 공의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왜곡·축소시키거나 침묵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혹 이러한 오류가 공개되면 소위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한국적 특수 사정이라는 것이, 교황의 무류지권이 그 진리를 담보하는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초대 교회의 순교 성인들은 당시 한국의 특수사정에 의하여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신앙을 죽음으로 증거하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교회는 인권에 관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그 입장 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의 고문 등에 대한 정의구현사제단의 대응,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교회 일부의 비판과 저항 등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라 하겠다.

지난 11월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한 주교회의의 서한을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 특히 주교단을 위시한 가톨릭 교회는 인권문제에 대해 교회가 여태까지 취해왔던 소극적이며 비우호적인 자세를 청산하고, 초대 교회의 굳굳한 자세를 본받아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충실히 세상에 증거하고 스스로 실천하여야 한다. 그것이 인간해방을 위한 교회의 소명임을 역대 교황들은 여러 번 되풀이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2부**'90년도 인권관련 주요사건일지****1월**

- 5일**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임종석 씨 국가보안법위반 24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9회,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9회 등 모두 40회의 실정법위반혐의 적용 구속
- 8일** –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 경영악화 이유로 1백 5명 예고없이 해고
- 11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만호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 13일** – <노동해방문학> 편집위원장 임규찬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7일**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생 박태호(필명 이진경)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18일** – (주)명성전자 노조 사무장 박선숙 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부위원장 이향순

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

– 부천 소명여고, 전교조가입교사 6명 직권면직

20일 – 북한 혁명가극 <꽃피는 체녀>를 낸 사람출판사 대표 김선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3일 –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의 핵심인 부인 정대화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24일 – 인천 삼화플라스틱 노동자 안효중 외 1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구속

2월

2일 – 경찰 당국은 각 경찰국과 경찰서에 ‘경찰 투입기준’이라는 공문을 통해 노사분규관련 형사사법의 검거지침과 노사대책반 편성운영의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112신고만 있으면 생의현장에 출동,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힘.

– (주)현대중합목재 작업장에서 구자춘 씨 강제연행 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3일 – 서울 대한광학 노조 사무장 최홍주 외 21명 노동쟁의조정법으로 구속

7일 – 서울시교위에서는 올 3월에 실시될 초중고 교원 정기전보시 전교조탈퇴교사들을 비정기전보대상에 포함시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장에게 시달한 사실이 드러남

– 동아건설 창동노조 전 사무장 최봉영 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8일 – 현대그룹계열사 부품하청업체 (주)덕양산업 노조대의원 김필현 씨 사무서위조 및 업무방해혐의 구속

9일 – 현대중공업 과업지도부 노조간부 항소심 구형랑에 항의해 이 회사 노조원 2만여 명이 작업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영현 씨가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9일 – (주)태평양화학노조 서울지부장 윤명선 씨가 시인 박노해 씨의 ‘김우중 글 전면비판’이란 글을 조합원교육 목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함.

10일 – 광주 서석고 졸업식장에서 전교조교사의 복직과 구속학생 석방을 주장한 졸업생 김승수 군이 교사들에 의해 집단폭행 당함.

- 12일** – 노동운동계급인 노동조직 적발, 편집부장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원진레이온 노동자 14명 이황화탄소 중독
 – 노동문학사 직원 김태종 씨 구속
- 15일** – 서울시내 대학 기독학생들의 모임인 기독교문화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 등 간부 12명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
 단독주택에서 전세 살던 50대 가장 이성남 씨 전세금 마련 못해 비관자살
- 17일** – (민족자주화운동) 등 6권의 책을 저술·번역한 정철영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9일** – 연탄공장 주변 주민 중 진폐증환자 속출, 서울에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됨.
- 21일** – 시집 〈붉은산 겉은피〉를 쓴 시인 오봉우 씨와 시집을 출판한 실천문학사 전 대표 이문구 씨, 전 주간 송기원 씨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서적 및 일기장 등 5종 141점 압수 당함. 23일에 오봉우 씨와 송기원 씨 구속
- 22일** – 인천 박문여고 교사 조용명 씨가 전교조탈퇴각서 미제출을 이유로 직권면직당함.
- 24일** – 한성대 조영선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24~25일**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15개단체가 공동주최한 3당야합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 강제해산, 이날 전국에서 225명 연행됨.
- 28일** –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전노협 의장 단병호 씨가 구속, 수감됨.

3월

- 1일** – 전국조동조합협의회 부의장 권용목 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
 – 현대중공업노조 기획실장 설남종 씨 구속
- 7일** – 오성사 해고자 이순용 씨(정보프락치 용의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마산 일꾼노동상담원 박창수 씨 등 5명 연행·조사, 8일에 4명 구속.
- 9일** – 서울 구로구 고척2동에서 세입자 김상명 씨 부인 박문자 씨가 전셋방 값이 모자라 이사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해 자살

- 10일** – 북부지역노동자연맹관련 4명 구속, 5명 수배
- 12일** – 전노협 기입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업무조사와 관련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한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 씨와 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김은임 씨는 구속됨.
- 13일** – 현대자동차서비스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14일** – 울산공단내 (주)영남화학에서 유독성 아황산가스가 새어나와 인근 주택가 2천여 가구의 1만여 주민들이 심한 구토와 두통증세를 일으키며 긴급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함.
- 15일** – 노동자대학 민철홍 씨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17일** – 서울 도봉구 도봉2동의 한 지하셋방에 살던 홍종환 씨(67·노동)가 방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구로 이사하려 했으나 셋방을 얻지 못하자 비관자살
- 18일** – 전북 노동자협의회 건설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이선재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21일** – 서울 중원전자 노조위원장 김정순 씨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
 – 동아대 백재광 외 9명 화염병처벌법 등 위반혐의 구속
- 23일** – 강원도 탄광지역 노사분규 합동수사본부는 태백 탄광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일제검거에 나섬. 태백시 상장동 광산노동자협의회 의장 배진 씨와 사무국장 조용일 씨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간사 전미영 씨는 불구속 입건됨.
 – 함성출판사 영업부장 임성안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백의출판사 영업부장 유환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25일** – 인천 명신여고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강신오 교사 등 해직교사 2명과 동조교사 4명, 학생 5명 등 11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됨. 명신여고는 26일부터 28일까지 임시휴업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학생 400여 명은 인천시교육위원회로 가 교육감 면담과 해직교사 복직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임.
- 27일**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이준한 씨가 방세가 밀린 것을 비관해 자살
- 28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영수 씨 등 2명 화염병처벌법 위반혐의 구속
- 29일** – 경남에서 창원, 마산, 울산 등 공업단지지역 분규 예상업체노동조합 핵심간부

200여 명의 개인별신상카드를 작성, 일선 시군 공무원과 유력인사들에게 순화 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짐. 이 카드에는 순화대상 노조원의 인적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성향, 영향력 행사자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각 담당공무원들은 이들의 활동상황과 거취를 매일 분석,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음.

4월

- 1일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샛방에 살던 정오순 씨가 오른 전세값 마련을 못해 비관자살
- 2일 - 마창노련 의장대행 이종엽 씨 구속
- 3일 - 도서출판 힘 전 대표 김연인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5일 - 경북 점촌시 점촌동 문경병원 진폐병동에서 입원중이던 이용호 씨가 2년 10개월 동안 치료받고 있던 중 자살함.
- 6일 -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장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 간부 6명 구속
- 10일 - 서울 강동구 천호동 반지하 단칸방에 세살던 엄승우 씨의 부인이 두 남매와 함께 동반자살. 2월 이후 두달 사이에 방세 급등과 관련한 자살자는 15명에 이르.
- 12일 - KBS에 경찰 900여 명 난입, 관제사장 서기원 출근저지 농성중이던 노조원 117명 무더기 연행. KBS 사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자정부터 1,700여 명이 제작거부에 들어감. 13일 오후에는 전 25개 방송센타의 6,000여 사원중 간부급 500명, 송출사원 1,500여 명을 제외한 4,000여 명이 제작거부에 합류
 - 인천노동상담소장 양재덕 씨 등 8명 강제연행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14일 - 도서출판 녹두 대표겸 편집장 신형식 씨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 16일 - 임금인상요구를 거부하면서도 탈세를 목적으로 부지를 교환하려는 회사측 자체에 항의하여 대구 동산의료원 노조위원장 할복자살 기도, 중태.
- 17일 - 지하철공사의 사원훈련 중 '장례식 행사'가 들어 있었음이 밝혀짐.
- 27일 - 87년 1월에 폐업한 충북 영동화학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하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으로 입원, 검사결과 모두 망간증독증 환자로 판명됨.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최창수 씨가 전세값 상승을 비관해 분신기도.

28일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4일만에 경찰 1만여 명 투입, 강제해산. 노동자 300여 명은 대형 크레인에서 농성시작

〈현대중공업 파업관련 일지〉

- 2월 9일 : 이영현 노조위원장 구속
- 3월 2일 : 설남종 노조기획실장 구속
- 3월 27일 : 윤재건 노조조직부장 구속
- 4월 26일 : 우기하 노조수석부위원장 구속
- 4월 25일 : 파업 돌입
- 4월 28일 : 상오 6시 경찰투입

30일 - KBS에 경찰 재투입, 사원총회 후 농성중이던 KBS사원 330여 명 강제연행

5월

- 1일 - 마창노련 주최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현대중공업 규탄대회 후 노동자 17명 연행, 4명 구속
 - KBS 보도국기자 이임호 씨 등 11명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
- 4일 - 현대중공업 파업사태와 관련 이날까지 730명이 연행되어 이중 12명 구속, 77명 불구속입건, 142명 즉석에 회부됨.
 - (주)통일 노동조합 대의원 이영일 씨 분신
- 6일 - 대우자동차 인천공장 노동자 2명이 코에 구멍이 뚫리는 불치병인 '비중격천공' 환자로 밝혀짐.
- 11일 - 서울 구로공단내 오리엔트 노동자 2명 수은중독 판명
- 15일 - 인천의 (주)보명 노동자 김재식 씨 회사측에 항의 분신, 28일 절명
- 16일 - 이문옥 감사관 구속
- 21일 - 올 1/4분기 동안 30,153건의 산업재해 발생 569명 사망으로 1일 6.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5.9% 증가된 것 (노동부 발표)
- 23일 - 직장폐쇄와 농성으로 맞서고 있는 인천 콜트악기 노조사무실에서 도청장치 발견됨
- 25일 -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노조탄압실태를 발표하며 5월들어 25일 현재까지 공권

- 력투입된 곳은 8개 사업장, 구속된 노동자들은 98명에 이른다고 발표함.
- 26일 - 원진레이온 퇴직노동자 1명이 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됨.
- 27일 - 부산에서 살던 60대 가장이 전세금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다 투신 자살.
- 30일 - 부산 부일 연탄공장부근 거주 주민 1명이 진폐증 판정을 받음

6월

- 1일 - 부산시 북구 사상공단 안 학장국교, 모라국교, 감건국교와 신평 장림공단의 장림국교, 효림국교 등 5개 교사 250여명과 학생 1만 3천여명이 공단에서 나오는 만성적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있으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남
- 마창노련 정상철 의장직대행 구속. 이로서 마창노련은 의장단 모두가 구속된 상태임
 - 부산노총 사무실 수색, 부산노동조합연합 의장 김진숙 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 4일 - 한독시계 직장폐쇄에 항의 농성중이던 노조원 4명 업무방해혐의 구속
- 6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복직시위를 10여회 주도했던 대구 명화여고생 투신자살
- KBS노조위원장 김철수 씨 업무방해혐의 구속. KBS사태와 관련한 구속자는 총 19명에 이름
 - 임금인상 농성중이던 세라아트에 경찰 투입 87명 강제연행, 3명 구속
- 8일 - 소녀가장 한숙자 양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함
- 10일 - 서울 구로구 신생공업사 경비실에서 진폐증환자인 경비원 송영상 씨가 쓰러져 사망함
- 11일 - 민자당 반대, 경찰의 교내수색 항의하며 강원대생 분실자살 기도
- 원화여고생 참교육실천 유서 남기고 투신자살 기도
- 14일 - 부천지역 노조협의회장 한경석 씨 노동쟁의조정법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
- 20일 - 석탑노동연구원 장명국 씨 구속
- 청주 한주전자 노조위원장 유진희 씨 등 노조간부 3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 22일 - 경남 울산시 석유화학공단 내 선경인더스트리 폴리에스테르 공장에서 초산이 10여분간 누출돼 인근주민 2,000여 명이 구토와 두통증세로 시달림
- 24일 - 충남 논산군 양촌고교 재단이사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진형 교사를 해임

7월

- 5일 - 학원시위와 관련 올들어 구속학생 수는 600여 명에 이른 이중 화염병 관련 구속은 478명으로 나타남(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 삼성조선 거제조선소(가칭) 민주노조 부위원장 이근태 씨 음독자살.
- 7일 - 태백시 한보단광 광원 6명 막장끝에서 농성돌입
- 9일 - 청도 주신기업 노조위원장 최태우 씨가 노동조합결성과 관련해 해고된 데 항의해 분신함. 최씨는 14일에 숨짐
- 16일 - 한국스타 여성조합원 구타로 임신부 2명 유산했으며 20여명 부상
- 25일 - 한보단광농성노동자 4명 연행, 구속
- 28일 - 20일째 작업거부중이던 장성평업소에 경찰 700명 투입, 박종례 씨 등 5명 강제연행

8월

- 2일 - 주 휴일을 제외한 연간 휴일수가 20일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64.5%이며 국내 기업의 연간 평균 휴일수는 19.6일로 나타남. 또 89년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4.7일이며 주당 노동시간은 49.2시간으로 집계됨(노동부)
- 3일 - 단체협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과업중인 부산 코바트노동조합에 경찰난입, 노조원 30명 연행되고 9명은 구속
- 5일 - 5월말 현재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12,990명으로 전년도 대비 35.2%의 증가율을 보임(노동부)
- 7일 - 한양대 제적생 최동 씨 구속증 고문후유증으로 신경쇠약에 시달려오다 분신자살

17일 – (주)원진레이온 퇴직노동자 8명이 또 이황화탄소 중독환자로 판명됨. 이로써 노동부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5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모두 전·현직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임

23일 – 강원도내에서는 지난해 74개 탄광업체가 폐광돼 746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올해도 21개업체 2,207명이 폐광으로 인해 실직하게 될 것으로 밝혀짐. 또 최근 실직 노동자 8,092명을 조사한 결과 1,325명(37%)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노령(350명), 진폐증(229명), 일반질병(273명), 기타(473명)로 집계됨.

– 연세대 문영환 교수팀이 최근 도금업체 327개소, 근로자 627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근로자의 55.5%가 크롬중독증상을 보였으며 이중 3.7%는 콧속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24일 – 올 상반기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0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0명보다 4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노동부)

28일 – 강원도 삼척탄좌 하청업체인 중앙개발 광원 강사남 씨가 체탄작업 중 허리를 크게 다쳤으나 회사측이 산재처리를 3개월째 미루는 바람에 생활고에 짜들린 강씨가 비관자살

–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객골마을’ 등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서울시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됨

29일 – 광화학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서울 일부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오존농도가 2배 가까이 확산되는 등 환경오염이 갈수록 악화됨

30일 – 안산 금강공업 노조 후생복지부장 원태조 씨 등 3명 분신사건 발생. 박성호 씨는 11일, 원태조 씨는 18일에 각각 숨짐.

31일 – 마산 (주)한국스타 노조 부위원장 김명희 씨 등 3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됨

– 대구 남성물산 파업농성 노동자 강제해산 후 노조위원장 권한대행 채한수 씨 등 3명 구속

9월

9일 – 시국관련 재소자 이명학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절단폭행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폐기흉 증세 보여 긴급수술

– 충주고 2년 휴학중인 심광보 군이 ‘참교육’ 유서 남기고 투신 사망, 10일 충주 고에서 민주학생장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고 교사, 학생 20여 명 강제연행

10일 – 7일 전국 8개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농민대회와 관련해 농민 이재원 씨 등 5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혐의 구속, 28명 불구속 입건

11일 – 고양군 둑 봉괴로 일산읍 38개리, 지도읍 29개리, 송포면 16개리 등 83개리 11,689가구, 45,080명 대피소동

– 인천 송림동 ‘달동네’ 산사태 발생, 주민 20여 명 폐죽음
– 한강 유람선 침몰로 승무원 등 15명 물사

12일 – 시위진압 중이던 경기도경 기동2중대장 안병업 경감 돌에 맞아 사망

13일 – 고양군 물난리로 주민 고의수 씨(62·농민)가 농경지가 잠긴 것을 비관해 자살

17일 – 경찰간부 사망사건과 관련 안산지역협의회 사무차장 김기환 씨 등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18일 – 경찰간부 사망사건과 관련 민중당 이두백 씨 등 2명 추가구속, 이날까지 이 사건으로 25명이 연행되어 8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9명 훈방, 1명 입건 조사중

– 고양군 물난리로 주민 양성진 씨가 자살기도
– 8월 27일의 서울구치소 교도관·재소자 충돌사건으로 36명의 재소자가 1~6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공식확인됨

20일 – 경기대 김승우 씨, 장석우 씨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구속

21일 – 경남대 총학생회장 구용범 씨 등 2명 집시법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구속

23일 – 육군 ○○사단 소속 정해용 이병이 행군중 과로와 구타로 인한 비장파열로 사망

24일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정책연구부장 임해규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군산대 정주영 씨 등 6명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 26일** - 부산지역 민주주의 학생연맹 소속 동아대 박지연 씨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대학졸업생 김윤자 씨 재학중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취직 안 되자 비관자살
- 28일** - 서울대 정길수 씨 등 2명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 29일** - 울산 박정근 씨 부부가 문을 걸고 맞벌이 나간 사이 일어난 화재로 박유수 군 등 3명 질식사
 - 서울 영진폐선 지하공장에서 노동자 배영하 씨가 야근수당 미지급에 항의 분신

10월

- 1일** - 대전 서부경찰서의 수사서류 500여, 건 경관이 업무과중 이유로 야산매립한 것 이 발견됨
- 4일** - 부산울산대학생총협의회 의장 박성현 씨 등 4명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보안사 윤석양 이병, 민간인 1,300명 사찰 자료공개 및 양심선언
 - 서울 서대문구 유석화(80) 씨 가난 비관과 망향시름 비관자살
- 8일** - 보안사 서울대 운동권학생 387명 사찰 추가확인
- 9일**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 민중당 마산갑구 연대사업부장 이성철 씨 등 7명 추가구속. 이로써 사노맹 관련 구속자는 9월 19일 이후 16명에 달 함
- 10일** - 구속된 대학생 집 안방에서 발견되었던 도청기가 고성능 도청기로 확인됨
- 15일**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 관련 유경종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이날 현재 이 사건 구속자는 21명에 달함
- 16일** -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 및 군정청산 국민대회 참여자 정혜경 씨 등 대학생 9명 구속
 - 경기도 (주)원진레이온 주변 주민 82%가 유독가스로 신체이상 호소
- 19일** -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발표에 의하면 6공화국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출판인은 모두 88명으로, 5공화국 7년전의 33명에

- 비해 급증한 것이 밝혀짐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 관련 이동기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총 구속자 수는 26명으로 늘어남
 - 서울 구로공단내 오리엔트전자 노조위원장 안향자 씨 등 4명이 수은증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과 요양승인 받음
- 22일** - 부산 파출소 여행자 순경이 폭행해 사망함
- 24일** - 안기부 앞에서 기습시위 벌인 한양대 정종혁 씨 등 대학생 8명 구속
- 27일** - 혁명적노동자 계급투쟁연맹의 전신인 혁명의 불꽃 이종원 씨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30일** - 안기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해 4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 31일** -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김주찬 순경 권총오발로 주민 사망. 김 순경의 오발사고 주장에 의혹 제기됨.

11월

- 2일** - 과학기술처 안면도 학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 발표
 - 경찰, 학생회간부, 목회자 등을 포섭해 프락치망을 운영해왔음이 밝혀짐(망원)
- 5일** - 한양대 총학생회장 김재웅 씨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이경해 씨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던 우르파이협 상 참관증 항의 할복자살 기도
- 6일** - 대우조선 용접공 김규성 씨 산재후유증으로 비관자살
- 8일** - 서울 열사람출판사 편집장 박강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한양대 휴학생 최웅현 씨 학생운동에 미친한 자책감으로 투신자살
 - 안면도 주민 10,000여 명, 핵폐기장 건설 반대 격렬시위. 9일 경찰 3,500명 투입 강경진압, 75명 강제연행
- 10일** - 전 전대협 간부 전생현 씨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11일** - 10월 29일 발생한 일가족 4명 생매장 사건 범인 검거
- 12일** - 안면도 사건과 관련 김한중 씨 등 7명 구속, 최석칠 씨 등 9명 불구속입건, 신형철 씨 등 3명 수배

- 13일** – 고참병들의 구타에 시달려온 보안부대 방위병 자살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관련 이준서 씨 등 4명 추가 구속
 – 외국어대 김상범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서울대 최형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경기도 평택의 농민 김윤목 씨가 수해로 농사를 망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비관 자살기도, 병원에 옮기자 다시 투신자살함
- 15일** –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홍보물 배포로 부산공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임형주 씨 등 2명 구속
- 16일** – 화성 여중생 성폭행당한 뒤 온몸 흥기로 난자당한 사체로 발견됨. 이는 화성 연쇄살인범과 동일범으로 추정되며 9번째 범행임
- 21일** – 청주대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 조직국장 고재권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20일** – 서울대 제적생 김진철 씨 등 8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21일** – 전남대 박종화 씨 국가보안법과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구속
 – 인천 남구 주안2동의 김상선 씨가 전세방을 구하러 다니다 길거리서 탈진해 숨짐
 – 6·25 때 빨치산 활동을 하다 36년의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정대철 씨 병고와 외로움으로 자살
- 22일** – 시위진압용 최루탄 구입에 책정된 예산은 7억원인데 올해 10개월간 지출된 비용은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치안본부 집계)
- 23일** – 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신영철(11)군, 범죄없는 세상 유서 남기고 투신자살
- 24일** – 기획출판 한 전 편집위원 김홍건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25일** – 국교생 자살 충격으로 강지현(12) 양도 자살
- 26일** –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자살한 초중고생은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문교부)
 – 낙동강에서 맹독성 중금속 검출(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 27일** – 목포 행남사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과 관련 이 단체 의장 고형권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점심 먹는 서울지역 초·중학생 3,000여 명으로 밝혀짐(서울시교위 국감 제출

자료). 국교생 1,904명, 중학생 968명으로 총 2,872명이며 이는 '89년보다 53명이 늘어난 숫자임

27일 – 올들어 시국관련 구속자 1,748명.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574명이 보안법, 703명이 집시법, 420명이 화염병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작년부터 올 7월까지 시국사건 영장 기각률은 일반사건보다 3배 낮아.(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88년 12월의 시국사법 내석방이후 89년 1월1일부터 올 7월말까지 시국과 관련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 7백4십8명에 이르는 것으로 26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30일 – 지난 11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종합전시관에서 열린 민중당창당 대회에서 사노맹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황정일(21, 숭실대 철학3, 휴학중)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1990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주요 일지임

생활환경파괴와 인권

개요

환경파괴의 심각성

오늘날 우리 인간은 삶의 토대인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댓가로 삶 그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되었고, 마시는 물이 오염되었으며,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을 다투어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공해문제의 해결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기존의 보사부 산하 외청으로 있던 환경청을 국무총리 산하 환경처로 승격시키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

한 정부정책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오염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날로 증가되고 각종 직업병과 공해병이 발생되고 있다. 공단지역·핵발전소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봉동 주민들의 진폐증 집단발병사건, 아연도금 노동자의 카드뮴중독 사망사건,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망사건,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 골프장 캐디의 기형아 출산, 농약중독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등에서 우리는 이 땅의 환경파괴에 의한 피해현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될 만큼 환경권은 중요한 권리임에 틀림없는데 환경파괴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피해상황이 일부에서만 드러나고 있지만 환경파괴로 인한 인권침해는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파괴의 주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는 순간만을 위한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나 개발이 난무하는 사회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환경은 “①생활체(生活體)를 둘러싸고 있는 일체의 사물 유기체(有機體)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 ②주의 정황(情況)”이라고 나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환경은 한 세대의 독점물이 아닌 지속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면서 인간만의 부를 위해 광분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의한 피해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데에 따른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복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러한 복수가 진정 환경파괴를 주도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인 일반 민중들에게 우선적으로 향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환경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환경파괴의 주범은 우선 정부를 가리킬 수 있다. 국민들은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정부에 세금을 내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막강한 권력을 정부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각 부처는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지껏 성장우선주의에 빠져 경제정책 등에 치중하면서 그보다 훨씬 중대한 환경문제는 등한시해왔다. 그것은 환경예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예산은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이 고작 0.3% 정도로 그 중대함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우리보다 환경오염이 덜 심각한 선진국들의 환경예산에 비춰보면 1/5~1/10정도밖에 안 된다. 선진국들보다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환경예산의 수준은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은 정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읽는 척도가 된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환경기구를 확대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예방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나타난 결과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이거나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허다했다.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서 국제적으로 공해기업으로 낙인 찍힌 듀폰사와 같은 다국적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어 더욱 정부정책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또 정부는 가끔 환경오염의 주범이 일반국민인 것처럼 책임소재를 흐려놓기까지 한다. 물 문제를 예로 들면, 생활하수가 주범인 것처럼 홍보하며 개개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들어있다. 생활하수가 상당부분 물을 오염시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국민개개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이익을 북인해 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날그날의 생활에 급급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의 광고를 믿고 합성세제를 사용하였는데 국민이 물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속죄해야 할 사행이다.

다음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은 다국적기업과 독점재벌기업이라고 하겠다. 이제 세계는 국제화시대이다. 국제화시대답게 공해산업 또한 수출이 된다. 인간의 권리나 건강보다는 자본의 논리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보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은 하찮게 보이는 것일까?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사람을 쉽게 죽여버리는 경우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공해물질을 아무렇게나 처리하며,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여겨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는 같은 맥락의 정신병(?)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자본의 존엄성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라고나 할까.

정부의 정책이나 대기업의 주장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국가발전을 위한다는 소리거나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말들이 들어 있다. 참으로 듣기 좋고 가슴 벅찬 소리이다. 그

런데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므로 국가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발전이어야 하고 국가경제 향상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향상이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국민생활의 양적인 평창은 했을지언정 질적으로는 현격히 떨어져버렸다.

생활환경파괴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폐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1항의 내용이다. 헌법에 명시된 “폐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파괴로 인해 침해당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일차적인 인권침해 당사자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권침해 당사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관해서 논하기로 한다.

일상생활 환경파괴로 인한 인권침해

생활환경파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최근의 보도에만 의거해도 수없이 많다. 우선 상봉동 주민들의 진폐증 사건을 들 수 있다. 상봉동 주민들이 삼표연탄 탄가루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음이 뒤늦게 알려진 뒤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공해병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삼표연탄공장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였다.

마침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서울시내 연탄공장 인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진이 실시되었는데 총 1,842명이 검진에 응했고, 그중 상봉동주민이 1,200여 명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은폐기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검진 결과를 보면, 총 검진자 중 50명이 진폐증으로 의심되는 정밀검진 대상자로 밝혀졌으며 그 중 상봉동 주민이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연탄공장이나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분노를 던져주었다. 게다가 연탄공장 옆에서 산 죄로 진폐증에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소송을 통해서야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것은 이중의 인권침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울산 영남화학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들 수 있다. 90년 3월 13일, 울산공단내 영남화학 황산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아황산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매암동과 장생포동 주민 1만여 명이 심한 복통, 구토와 호흡장애를 일으켜 긴급대피하는 큰 소동이 있었다. 10여 분 동안 유출된 유독가스는 1시간 이상 주거지역을 뒤덮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회사측은 순환펌프의 고장으로 아황산가스가 일시 누출됐다고 해명했으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도 아황산가스와 불소 등이 주택가로 유출되어 두통·구토증세를 일으켰다고 한다. 울산·온산지역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 온산병이라는 괴질 때문에 정든 고향을 두고 병든 몸으로 강제이주한 지역으로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또 그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피해가 뒤따를지 모르는 위험지역이다.

한편 90년 2월 현재 가동한 지 불과 17개월밖에 안 된 (주)극동정유(충남 서산군 대산면)의 인근부락이 극심한 공해피해로 생계의 위협뿐만 아니라 더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른바 온산증후군, 즉 온산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극동정유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유, 폐수로 천혜의 어장은 완전 폐장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었던 배어포의 원료 실치가 89년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얇은 바다에서 잡히는 망둥이는 100마리 중 20~30마리가 기형이며, 굴·바지락 등에서는 독한 기름냄새가 나서 상품가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식용이 불가능해졌다. 공해피해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신체적 이상이다. 특히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들은 폐렴 등 만성호흡기질환, 기관지장애, 심한 두통, 안질,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증세가 점차 건강한 성인 남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데, 85년 이후 엄청난 충격을 준 온산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주민들 가운데 35%가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성 난청은 2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직업병의 하나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겉으로 드러난 증상 말고도 정서불안정, 성격의 난폭화 등도 심각한 문제로서 사격장 이전이나 주민이주 등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게다가 핵발전소 인근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기형가축이 태어나고 어폐류가 멸종되

어가고 있으며 기형물고기가 속출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의 온배수 방류지역인 전북 고창군 상하면 일대에서는 소와 개의 기형가축이 계속 출산되고 있다. 이 기형가축들은 대부분 앞다리가 굽거나 뒤틀려 제대로 서 있질 못한다. 이외에도 특이한 경우는 갓낳은 젖소들의 몸체들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거나 형편없이 왜소한 형태로 사산되거나 유산되는가 하면, 발이 3개뿐인 소나 개가 태어났고 귀가 4개달린 기형송아지가 태어났다 죽기도 했다. 이 지역은 천혜의 굴 자연양식장이며, 대일수출품인 노랑조개의 집단서식처이자 해태양식의 적지인데 일대연안에서는 3년 전부터 어폐류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기형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 및 설문조사를 벌인 광주·전남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4개 보건의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선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탈모, 무기력증, 피부·안과질환, 자연유산 등이 일반 농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혈액학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4%가 방사선오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빈혈, 백혈구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체육부가 '건전한 대중 스포츠'라고 건설허가를 잇달아 내주고 있는 골프장이 전국 곳곳에서 국토를 깎아먹고 있다. 골프를 치는 자체만 놓고 보면 건전한 스포츠일 수 있겠지만 골프로 인해 다수가 심각한 피해를 본다면 분명 사회악임에 틀림없다. 보통 골프장은 30만 평 정도의 규모이다. 여기에는 두 팀(8명)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루에 1백 50명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1개의 골프장 면적이면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도 대중스포츠라고 한다. 현재 골프장 총면적은 영업중인 곳 40개와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116곳을 합해 6천 2백만 평이나 된다. 이는 인천직할시에 버금가는 면적으로 전국 택지 면적에 비하면 11%에 해당하고 전체공장면적을 합친 5천7백만 평을 훨씬 웃돈다. 토지소모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골프장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건강한 삶을 위협한다. 열핏보면 골프장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살아 있는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생태계 파괴에 다름 아니다.

잔디일변의 식생은 자연생태계 파괴이며 인위적인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가에서는 사용이 규제된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한다. 보통 농약의 경우에도 발암성·잔류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살포하는 농약보다 위험한 농약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단위 면적당 살포량이 일반농가의 5.5배)

또한 골프장은 배수성을 제1조건으로 삼고 있다. 비가 올 때나 집중호우 뒤에라도

바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잔디 바다 밑에는 모래로 되어 있다. 그 밑에 배수관이 매립되어 있어 뿌려진 농약은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된다. 하천으로 유입된 농약은 마을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광역 상수원에 유입되면 그 피해범위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은 야산을 깎아내고 나무를 베어낸 후라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홍수가 나고 산의 보수(保水)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어 가뭄이 들게 된다.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고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식수조차 얻기 힘들게 된다.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골프장 공사에 따른 발파파해, 교통사고 등 예기치 않은 재해를 당하며 자신들의 터를 잃게 된다. 게다가 골프치러 온 높으신분(?)들의 행태를 보면서 일할 맛을 상실하게 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현실비판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도 안전하지 못해 결혼 후 기형아를 낳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생존권 피해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골프장 회원권 5천만 원짜리 2천 장만 팔면 18홀 규모 공사비 4백억 원을 빼고도 순이익 6백억 원이 남기 때문이다. 또 수십의 평이 땅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몇십 배의 가격으로 뛰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몇몇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놀이를 위해 수십년 동안 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내려온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행위는 분명히 정부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이외에도 환경파괴에 의한 인권침해는 허다하게 많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약공해, 해양오염, 쓰레기, 산업폐기물, 소음, 진동 등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환경이 지나치게 오염되어 있어서 위에 열거한 피해를 누구나 당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 환경파괴를 일삼으며 인권침해만 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멸로 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환경파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이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구조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인류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사회구조의 모순과 환경파괴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만 이 해결책이 드러난다.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환경파괴로 인해 자멸할 것이라는 각성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현상이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 새로운 환경법을 제정하거나 환경분야의 직원을 늘리는 등 단편적인 활동에 그쳐서 유감스럽다.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그 해결책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익만 보장되면 무작정 생산해내는 체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생산해내는 체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성장의 척도로 국민총생산(GNP)을 이용하는 사회에서는 오염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어 치료비가 들어도 국민총생산은 상승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오염물질제거기를 구입해도 그 비용은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내용면에서 보면 삶의 질이 훨씬 저하된 사회인 것이다. 또한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회가 아니고 재생가능한 물건을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사회구조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엄청난 가격의 자동차나 옷을 지니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소비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모든 정치형태 및 사회구조 속에 뿐만 아니라 각자의 행동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이 분명히 파멸로 가는 길이라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향하여 과감한 전환을 하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인간이 인간을 부의 축적도구로 보는 세상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이익에는 냉담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쉽게 짓밟는 풍토가 조성된 것이다. 환경파괴가 극심한 사회에서 범죄형태가 날로 흥폭해지는 것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형태의 범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것인가. 범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환경파괴와 관련되어 있고, 환경파괴는 사회구조와 깊은 유기적 연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만이 파멸이 아닌 서로 더불어 사는, 생명력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되는 세상, 죽임의 문화가 아니라 살림의 문화가 뿌리내린 세상,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이며 하느님 나라인 것이다.

한국 농업·농민의 생존권

개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많은 얘기가 필요없을 만큼, 최근의 신문만 몇장 넘겨봐도 농민생존권은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11월 13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일대 농민 30여명은 수매공관장에서 쌀의 희망 출하량 전량수매를 요구하다가 거절되자 “우리는 빠빠지게 농사지어 고작 수매동냥이나 하는 거지가 아니다”라고 정부를 규탄하며 햇벼 10여 가마를 불태우다가 김남일(39) 씨 등 8명이 방화죄로 입건되었다.

—11월 14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정기순(51세·여) 씨 집에 군의료보험조합 김낙순 징수계장이 들어와 주인이 없는 데도 밀린 보험료 22,500원을 걷는다고 쇠톱으로 곳간 자물쇠를 자르고 벼 10가마를 싣고 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11월 16일~18일까지 서울 경희대에서 노래극 경연, 씨름대회, 항토먹거리 장터와 지역특산물 직판 등이 주내용인 '90전국농민 추수대동제'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은 행사자체를 원천봉쇄했다.

—11월 13일 평택군 서탄면 신마두리 김윤목(39) 씨는 소작논 3,000평을 경작하다 지난 9월 수해로 쌀이 변질돼 제값을 받을 수 없어 농협 빚과 사채 400만 원을 갚지 못할 것을 비관해 농약 음독자살을 꾀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5층 육상에서 투신자살했다.

농민이 땀흘려 거둔 벼를 불태우고, 외세와 독재를 화형에 처하며, 의료보험조합의 절도형 강제징수와 경찰의 원천봉쇄 그리고 빚진 농민이 자살하는 것 등이 오늘의 농민생존권의 단면이다.

전면적 파탄으로 내몰리는 농민생존권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생존권이란 과거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복지 국가 지향의 개념이다. 우리 헌법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에 대한 국가보호 등이 생존권의 주요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동 선언 23조 3항)’과 “의식주·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동 25조 1항)”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생존권 조항은 헌법의 장식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체제의 유지·강화에 버팀목이 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올바른 국가권력은 생존권 보장에 인색하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의 농민생존권과 국가권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국가권력은 농민생존권을 보장은커녕, 결핏하면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등으로 금압하고 있다. 농민들의 땀의 댓가를 우습게 여기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원천봉쇄의 칼을 뽑는다.

지금 우리 농업·농민은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위기는 밖으로는 우르파이라운드 협상(이하 유알협상) 타결과 안으로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이하 농발

대)의 강행이라는 양면협공으로 농업의 전면적 파탄, 농촌공동체의 전면적 붕괴를 넘어서 도시의 주택난·교통난·실업자증가·국토의 환경보존기능의 파괴·국민건강의 적신호 등 전체 국민생활의 위기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유일과 농발대를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내외독점자본의 우리 농업·농민침탈의 모습을 주로 보면서, 동시에 이런 국제적·국가적 모순구조의 악순환과정에서 일시적·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농촌지역의 '돈에 얹혀들어 농민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몇 가지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기에 놓인 농업·농민문제

"농촌 노총각 장가 못 가 자살"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하다" "연례행사가 된 농축산물 파동" "농민들 빚갚을 능력상실"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농업·농민문제의 실상이다. 오늘날 농업·농민문제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땀흘려 일한 댓가와 보람을 못 느끼며 분노와 체념 속에 농사를 계속하면서 빚만 늘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땅값이 올라 큰돈을 만진 농민들의 얘기라든지, 어쩌다 채소값 고기값이 폭등하여 느닷없이 수천만 원을 손에 쥐어보는 경우라든지, 또한 농촌에도 자동차가 늘어나고 다방과 맥주집이 들어서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 또한 오늘의 농업·농민의 모습이다. 어느 것이 농업·농민의 실상인가? 모두 다이다. 단지 앞의 것은 전체적인 모습이고 뒤의 것은 전체 속의 부분적인 모습일 뿐이다. 동시에 전체와 부분을 관통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농민의 인간성이 상실·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의 농업·농민문제는 주로 외국농산물의 대량수입, 농가경제의 악화, 소작농·부채농의 급증, 농촌의 공동화(空洞化) 추세 속에서 상업적 농업이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외국농산물의 대량수입과 저농산물가격정책의 강행

지난 30년간, 특히 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외국농산물수입개방과 저농산물가격정책의 일관된 강행은 농가경제의 파탄, 지속적인 대규모 이동, 국내 작물재배체계의 왜곡, 식량자급도의 하락, 농가부채의 급증 등 국내농업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농촌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 수입개방과 저농산물가격정책은 농민·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내외독점자본만 이상비대·팽창하게 하였고 수많은 도시빈민을 생존의 사각지대에서 해매게 하고 있다.

가. 외국농산물의 대량수입

● 과정

- '70년대 말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서 저임금—저물가유지와 국제수지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개방농정으로 전환.
- '80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한이래 '88년까지 농수산물 95개 품목을 수입개방하여 농축산물수입자유화율은 68.3%('84년)에서 75.1%('88년)로 증가.
- '89년 "4·8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 발표. '91년까지 243품목 수입개방 예시하여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율은 86.2%('91년)로 증가할 예정.
- '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한국의 GATT 18조 13항 졸업 예정으로 '92~'97년까지 3년씩 2단계로 269 품목 개방 합의.
- '90년말내지 '91년안에 유일 농산물협상타결 예정으로 전면개방 전망.

● 구체적 실정

- '89년도 우리 나라는 콩을 제외한 곡물류만 해도 무려 1021만 6500t (일년 내내 매일 2만8000t 임)을 수입하여 미국농산물의 대외수출에 있어 일본에 이어 제2의 고객이 되었다.
- 농산물 수입액의 증가추세는 '71년 4억 3600만불에서 '89년 36억 8000만 불로 증가—약 1400여 가지의 값싼 외국농산물의 지속적 수입확대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전체 농산물 작부체계의 왜곡→주기적인 농산물 가격파동을 가져왔다.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78년부터 '89년사이의 재배면적 변화를 보면, 쌀 123만정보→125만 7천정보, 보리 53만 7천정보→13만 3천정보, 밀 1만 7천정보→400정보, 콩 24만 7천정보→15만 7천정보로 급격히 줄어 들었다. 이것을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94%이던 '65년과 '88년 재배면적을 비교하면 쌀 5.9%증가, 맥류 290%감소, 두류 68%감소, 서류 254%감소, 잡곡 186% 감소한 반면 특작 58%증가, 채소 18%증가, 과실 54%증가로 나타난다.

- 즉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은 급속히 축소된 반면 양념류, 채소류, 과실류등의 일부 작물만 급속히 늘어나 이들 품목의 과잉생산—가격폭락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80마늘파동 '83양파·고추파동 '85소파동 '88고추파동 '89감자파동 등

이다.

- 이렇게 외국농산물에 밀리고 저농산물가격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땅을 이예 묵히거나 이모작을 기피하여 경지이용율은 '71년 136.5%에서 '88년 116.2%로 떨어졌다(만약 '71년 경지이용율대로 보리를 생산했다면 57만정보에서 무려 1100만섬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 나올 것이다.)

- 식량자급율은 '65년 94%, '75년 73%, '88년 38%로 떨어졌고, 특히 밀은 0.1%, 옥수수는 2.5%, 콩은 15%에 불과하다. 만약 기상이변이나 전쟁으로 식량수입이 막힌다면 일년에 226일은 굶어야 할 지경이다.

- 그러면 농산물은 구체적으로 누가 왜 수입하는가? 주로 재벌이다.

재벌들은 첫째,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엄청난 차액을 노리고 둘째, 재벌이 장악한 식품가공산업(이것은 25개 재벌의 주력업종이다)을 통해 주로 수입원료를 가지고 몇배의 부가가치를 챙기고 셋째, 가장 근원적으로 저곡가—저임금노동자—산업예비군을 확보한다.

외국농산물수입회사는 '87년에 120개였던 것이 올해는 587개로 늘어나 커피 47개사, 밀 38개사, 과실및 가공식품 30개사, 돼지고기관련 44개사, 옥수수 29개사 등의 팽창세를 자랑하며 이들은 거의 다 외국 곤물메이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 저농산물가격정책의 실상

독점자본은 최대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이를테면 '88년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GNP의 95%였다)으로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저임금의 전제로서 저농산물가격정책을 관철한다. 게다가 공산품은 비싸게(=독점가격) 농산품은 싸게(=경쟁가격) 파는 부등가교환이 굳어져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나라 농업소득의 반이상(52%)을 차지하는 쌀을 보자. '89년 정부의 쌀수매값을 1가마 평균 95,000원으로 계산하고 농민들의 한계생산비인 111,151원과의 차액에 4,000만섬을 곱하면 1조 2926억 원이나 손해를 본 것으로 된다. 이로써 농민들은 '85~'89년 동안의 벼농사에서만 약 6조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고, 이것은 바로 재벌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다.

농가경제의 악화와 소작농·부채농의 증가

농산물수입과 저농산물가격정책의 연합공세로 농가경제 형편은 직접적으로 농가부채, 소작의 확대로 나타난다. '88년도의 군단위 소득은 시단위소득의 79%에 불과하다. 실제로 '89년 농가소득 943만 7000원에서 넣어서는 안될 수치인 재고농산물 증감액 80만원, 대동식물 증감액 50만원, 이전수입 180만원을 빼어버리면 실제로는 633만여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사만으로는 가계비가 충당되지 않으므로 빚을 내어 살림을 꾸려야 하는 결과로 진행된다. 실제로 농업소득에 대한 농가가계비 충족도는 '88년에 평균 81%밖에 안되며 0.5정보 미만의 소농은 34%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80년 33만 9천만원에서 '89년 389만 9천원으로 11.5배 늘어났으나 같은기간에 농가소득은 3.5배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농가경제 악화→부채농화·빈농화의 진행은 농민들을 농업생산의 기초수단인 토지로부터 분리를 강요하여 소작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작지는 '88년에 전 농지의 34.8%인 74만 4천정보, 소작농은 전농가의 63.4%인 118만 5천호로 늘어났다. 소작지중 비농민소유면적인 66.7%에게 지출하는 소작료는 약 6,000억 원에 달 한다. 소작의 증대는 농업생산을 화학농법에만 의존하는 극도의 약탈농업으로 치닫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농약과 비료로 뒤덮인 농산물생산과 농민의 농약중독을 강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파괴하여 농업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종당에는 토지 자체의 생산력—생명력—을 고갈하게 한다.

농촌의 공동화—대량이농과 농업노동력의 고갈

농가경제의 악화→부채농화·빈농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민들은 연평균 40만 명 이상이 농촌을 떠난다. 농가인구(농가호수)는 '80년 1082만 7000명(212만 8천호)에서 '89년 678만 6천명(177만 4천호)으로 줄어 전체인구의 16%에 불과하다.

이농대열의 주된 구성은 청장년층이므로 농촌의 노동력은 노령화·부녀화되고 있다. 농촌인구 구성은 50세 이상이 거의 1/3을 차지하여 대규모 자연 양로원화되고 있으며, 여성농민들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려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 한 예로 '89년 전북 순창군 여성농민들의 건강실태 조사를 보면 산후조리를 사흘이상

한 사람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부채와 이농은 농촌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내년부터 15명 이하의 분교는 모두 폐교하여 농촌아동들을 본교로 통학시킬 예정이다. 또 한 예로 농업고 등학교의 추세를 보면, 전체고교생중 농고생의 비율은 '67년에 10%(128개교)에서 '79년에는 4.5%(59개교)로, 다시 '89년에는 2.3%(57개교)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더욱 악화되는 농민의 생존권—농발대와 유알

무릇 세상만사 특히 경제는 어제없는 오늘이 없는 것이며, 토대와 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없이 몇가지 대중요법으로는 잘못된 것이 해결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막 다른 골목에 물린 오늘의 농업·농민문제는 역사적·구조적·문명적 복합모순의 산물이다.

'45년 분단으로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이래, 우리 나라는 '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6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강행하여 양적으로는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루하였다. 민족적·정치적 정통성이 없던 3공이래의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이란 과실과 적나라한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해외의존적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 공업화 전략' 아래 요구되는 대량의 저임금노동자와 산업예비군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저농산물가격정책과 해외농산물의 대량수입은 내외독점자본의 입맛에 맞는 구조요,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밖으로는 종속성의 심화, 안으로는 독점성(=불평등)의 강화가 굳어지면서 우리나라 농정의 기본목표도 계속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위상이 축소·파괴·경시되는 길을 밟아왔다. 60년대의 '식량자급'이 70년대에는 '주곡자급'으로 축소되었고, 80년대에는 '개방농정'으로 종속성이 강화되었고, 이제 90년대에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업구조 조정'으로 대외 종속성과 대내 독점성이 완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의 국제적 조건이 유알이며,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국내농업 정책이 농발대인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석유값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절약·물가불안 등으로 난리인데, 작년에 우리가 99.9%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 밀가격이 톤당 38불이나 올랐는데도 정작 주무부서인 농수산부조차 별 걱정이 없는 눈치이다. 클레이턴 아이터 미 농무장관은 유알협상에 있어 "최소한 농업문제에 있어서 미

국은 자신의 이익을 누기봐도 분명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경고와 결의를 다지는데, 9월 19일 노대통령은 오히려 "앞으로 농촌인구를 5%로 줄이는 구조개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혀 농발대의 2000년도 목표인 10.4%도 성에 안찬 '내멸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유알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이란 형식 속에 실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EC, 일본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지배전략이다. 유알의 본질과 내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국내농업구조 조정—유알의 국내판 농업정책—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관점대로 "규모화·전업농육성과 소농의 전업(轉業)·겸업화전략은 빙농수탈로 노동자화하고 부농만 키우는 시책"('89 장기농정방향 중간보고서)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유알과 농발대를 관통하는 것은 미국과 독점자본의 관점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자본축적을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알 협상

유알은 15개 분야의 다자간 국제통상협상으로 전체가 우리 농업·농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여기서는 직접영향을 미칠 농산물분야, 열대식품분야, 관세분야, 서비스산업에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의도와 그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첫째, 모든 수입제한조치의 철폐. 궁극적으로 관세장벽까지도 철폐 둘째, 10년내에 모든 농업지원정책의 철폐(단 병충해방제사업, 영농포기를 위한 구조조정 등은 예외)와 수출보조금의 조기철폐 셋째,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농산물 위생검사 넷째,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의 한정적·예외적 허용 등을 목표로 "농업분야 타결없이는 UR협상에서의 퇴장"이라는 강경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EC와 일본은 첫째·둘째 항의 완만한 진행과 NTC에 있어서 일본의 베텁으로 타결을 목전에 둔 "일시적 교착상태"에 있으나 상호간의 약간 양보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될 전망이다. 유알에 대해서 현정권은 쌀 등 15품목의 NTC 관철, 유예기간의 보다 많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발대에서 이미 드러나듯 '수입자유화—유알협상 타결'을 대부분 전제해 놓고 유알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알타결 이후의 전망은 전체국민에게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20%선 예상)으로 식량위기 때마다 엄청난 외화부

담과 함께 일종의 ‘식량보호령’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고용구조에 있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90년 19.1%에서 2000년 9.2%로 줄어 취업난·실업자문제가 증대된다. 셋째 지역경제와 농자재산업의 도산으로 중소상공업의 대폭 위축이 예상된다. 넷째 국토의 환경보전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다섯째 오염된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으로 국민건강은 악화된다(예를 들어 쌀의 소비가 줄고 즉석식품·가공식품위주의 식생활로 이미 비만어린이가 12~14%이고, 대장암 환자가 ’79년대 이후 2배 늘어났다).

농업에 대한 영향은, 농림수산부의 의뢰를 받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시장개방피해추정에 따르면 “쌀·보리·콩·쇠고기 등 19개 주요품목의 년간 농가소득만 약 4조 977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 하며, 1000억원 이상 피해품목은 쌀만 3조 7000억 피해에 보리와 매주보리, 고추, 쇠고기, 콩 등 5개 품목이고 300억원 이상 피해품목은 옥수수·감자·팥·닭고기·우유 및 유제품·포도·감귤·땅콩 등 8개이며,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사과·양파·호프 3품목 뿐이라고 한다. 이것을 ’91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부문만 계산해보면 약 30만 명의 축산농민이 실업자가 되고 연 21조원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농발대

농발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80년대의 개방농정이 ’90년대의 수입의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빈농·소농을 내쫓고 부농·기업농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을 완료한다—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농발대의 추진배경은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미국(일·EC)의 세계경제지배전략 그리고 국내독점재벌의 독점강화전략으로서 국제적, 국내적 산업구조 조정을 농업에 강요·관철하는 것이다.

농발대의 총량지표는 2000년에 농어가 인구비중은 10.4%, 영농규모는 1.67정보(전업농은 2.7정보) 농가소득은 2,558만원에 농외소득비중은 70%, 도로포장을은 100%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농발대의 기본골격은 첫째, 수입의 전면개방과 농업지원축소로 몰락하는 빈·소농을 탈출시켜 농가호수를 120만호로 줄이고, 30만에서 50만호 정도의 ‘상업적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한다. 둘째, 전업농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소작을 합법화하고 이런 모든 작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담당한다.(이미 농진공의 농지제도개선안 발표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토지정책으로 우리나라

농경지의 반정도가 농업포기 내지 투기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전면수입개방·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산물을 육성작물과 도태작물로 구분하여 쌀·보리·채소·양념류·과실류 등 몇 가지만 중점 육성한다. 넷째, 농업소득증대정책은 포기하고 농촌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증대방침에 주력한다. 농외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농공지구는 ’93년까지 350곳, 농어촌부업단지는 1500곳, 농촌휴양지(관광지)는 250곳으로 확대·조성한다. 다섯째, 농산물은 수급안정(가격보장이 아님)에 중점을 둔다. 여섯째, 면소재지 개발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여 농촌은 농업종사자가 아니라도 국민의 25% 정도가 살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요컨대 농발대의 기본은 수입개방—소수의 전업농 육성—농촌공업화로 농외소득증대—정주권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은 농업의 본래 위상인 생명산업과 종합산업·미래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쌀·채소·사과·배·돼지고기·닭고기 정도나 자급하는 절름발이가 될 것이며 정부가 집중 육성한다는 전업농조차도 수입개방에 밀려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농촌공업화·농진공의 사업 등으로 농촌은 공해의 확산, 토지투기와 소작의 집중지역이 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과 연결된 각종 레저시설·골프장·관광농원 등으로 퇴폐·향락의 전국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농촌에서 밀려난 300만 내지 400만 명의 농민들은 도시의 새로운 빈민문제·노동자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몇 가지 사례

일산 신도시개발과 농민생존권

작년 5월 정부는 경기도 고양군 일산지역 460만평에 인구 30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다. 편입대상지역의 인구구성은 ’90년 1월 1일 현재 18,303명, 5,357가구 중 농가 1,316호, 비농가 4,041호 (이 가운데 서울 영천과 불광동 등지에서 철거당한 세입자가 상당히 많다. 세입자는 2,671호)였고, 이들은 ‘일산 신도시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그동안 자살형의자가 5명(농민 2명, 가옥주 1명, 세입자 2명)이나 발생하는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정당한 생존권 문제는 유야무야된 채 정부와 토지개발공사가 말하는 소위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만이 진행되어 이제는 주민의 20% 정도만이 외로운 생존권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신도시건설반대투쟁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가지만 살펴보겠다.

-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채, 반 강제성으로 물건조사 열람을 근거로 한 토지 개발공사 사업은 무효이다.
 - 보상심의원은 주민 스스로가 선임한 사람이 아니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 신도시 건설지역은 전체의 70%(322만평)가 절대농지이고 이미 경지정리된 곳이다. 왜 주변 구릉지를 택지화하지 않는가?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는 구릉지, 잡종지, 야산, 자연녹지, 골프장 등 약 1억평이 있는 데도, 왜 절대농지에다 신도시를 건설하려는가?
 - 동시에 고양군에는 도시기반이 조성된 원당읍·지도읍에 택지개발 가능지역 500만 평이 있는데, 왜 9m 이상 매립을 해야만 하는 저지대에 결설험하는가?
 - 기존 마을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의 뿌리로서 전통생활양식과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야한다.
 -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한다. 다만 이것이 힘들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부의 합동으로 하자는 주민 1,588명의 청원은 왜 무시하는가?
- 사실 일산 신도시 건설사업은 당시 부총리도 사후에 알았다고 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졸속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택지개발지역(대부분이 좋은 논·밭지역임)의 주변 구릉지는 이미 돈 많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이곳의 농민 약 1,300세대 중 100여가구만이 농업과 관계를 맺을 것 같고, 나머지 농민과 세입자, 소작농은 이른바 '딱지'를 팔거나 다른 변경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곡된 상업적 농업

올해처럼 여름채소값이 폭등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8~9월의 기상조건으로 떼돈을 번 고냉지 채소재배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의 대상인들은 밭떼기는 물론 전국의 주요 고냉지 지역에 직접 인부를 싣고 오거나 부분적으로 현지에서 조달하여 보통 수만평에서 크게 30만평까지 채소를 심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강원도 홍천군 00면 고냉지채소지역의 경우, 올해 무·배추를 20만평 경작하여 10 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품값이 폭등하여 하루 7

만원 심지어는 10만원까지 올라 많은 농민들은 자기일 보다는 품팔이에 열중하여 어느 부부는 1,000만원을 벌어들인 집도 있다. 이곳은 작은 면소재지인데도 일시적으로 돈이 흔해지자 룸 살롱까지 영업을 하고, 다방의 티켓제(시간당 얼마씩)으로 여자를 사서 노는 것으로 전국화된 현상임)가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아주 특수한, 어쩌면 병적인 사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상업적 농업'의 진전이라는 것이, 더구나 비농민이 주인이 된 상업적 농업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때 농민은 한낱 농업노동자로 전락하여 '돈'에 환장한 현상이 만연하고, 농업생산은 화학농업위주의 단작화(單作化)로 치달아 반(反)생명적인 절름발이 농업이 되고마는 것이다.

어느 농민의 구속

옥수수 수매에 얹힌 사건이다. 강원도 홍천군 동면 단위농협 조합장은 '88년산의 묵은 옥수수(일설에는 중국산 수입 옥수수라고도 함) 2,000가마를 햅옥수수로 둔갑시켜 수매하여 차액을 차복하려 하였다. 다행히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안 조합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대표 허완구 씨와 임종진 씨가 조합장의 면살을 죄고 혼들며 플라스틱 소주병을 집어던졌다고 하여, 조합장이 고소해 홍천경찰서에 입건되었다. 분개한 마을주민들은 며칠 후, 어느 초상집에 문상온 조합장을 "사람같지 않은 놈"이라고 규탄하였는데, 며칠후 두 농민은 업무방해와 폭행혐의로 구속되었다. 마을주민 한 사람이 조합장에게 이런 사실을 항의하다 탁상 위에 있던 재털이가 깨어졌는데, 이것으로 그는 구류 7일을 받았다. 경찰서 수사과장도 합의를 하라고 하였으나 조합장이 거절하여 구속 농민들은 춘천교도소로 넘어가 보석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은 얼핏보면 아주 작고 어처구니없는 듯하나, 실은 농촌의 이른바 '권력구조'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다. 지역유지로서의 조합장, 치안실무 핵심관료로서의 수사과장, 그리고 힘없는 농민들의 상호 역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물론 조합장은 부정수매사건으로 입건만 되었고 구속은 되지 않았다.

마무리에 대신하여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다만 농업·농민만의 문제인가? 모든 것은 작게보면 상호 대립 갈등하지만, 크게 보면 상호의존·보완관계이다. 이제 잘못된 물질중심의 가치관을, 끊임없는 성장에의 환상을, 독점적인 사회구조와 반생명적인 문명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명의 문명·공동체적인 사회”를 이루어야만 한다. 온갖 형태의 독점·독재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새로운 대안—생명·공동체—건설을 역동적으로 통일해야만 한다. 그것은 농업 본래의 위상인 생명산업, 생명의 일꾼으로서의 농민의 위치와 역할을 농민 스스로 그리고 도시소비자와 함께 자리매김하고 싸우고 연대하고 북돋우는 데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도시빈민의 주거권

개요

90년은 철거와 주택문제를 둘러싸고 도시빈민을 포함한 광범한 서민대중들의 노동력 재생산 위기가 첨예화된 해였다.

재벌의 토지투기는 택지값 상승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여기에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만연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세입주자의 임대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간 5%로 제한되자 전세금이 2년간 뮤일 것을 염려한 주택소유자들이 미리 전세값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연유로 주택의 전세값이 폭등했다. 올 봄 서울의 경우 전세가가 21.9% 치솟았다.

이런 현상은 연쇄반응을 불러 일으켜 노동자, 도시빈민, 기타 서민들의 전월세값 양 등을 가져왔으며 봄이 와서 본격적 이사철이 되자 빈민층 곳곳에서 살 방을 구하지 못

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월세 고민하던 20대 주부 자살—철거요구에 고민 ‘방도 없고 돈도 없다’ 유서”

“30대 가장 월세 못줘 자살”

“6만원 셋방 비우게 된 가장, 전세금 없어 자살”

“집세 고민 일가 3명 자살”

“전세값 비관, 두달새 15명 목숨 끊어”

올해 3월, 4월 신문지상을 장식한 충격적 보도였다. 주택위기는 결국 이땅 최하층 빈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다 못해 강요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다.

전·월세비 폭등으로 자살자 속출

서울, 대구, 부산, 성남 등 전국의 대도시에 걸친 서민들의 자살은 특히 4월 10일 “대물린 가난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릴 수 없다”며 서울 천호동에 사는 엄승욱(40)씨가 부인을 비롯, 어린 자식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해 충격을 더해졌다. 엄씨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근면하게 살아왔지만 지상에 한 가족이 살 방을 마련 못하고 끝내 천상의 집을 꿈꾸며 숨져간 것이다.

2월 13일 성남에서 자살한 이성남(54)씨의 경우 자신은 행상을 하고 부인은 파출부로 나갔었다. 이밖에 용접공, 날품노동자 등이 전·월세비 상승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었다.

주거권 자체가 심히 유리된 상황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막바지에까지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0년이 저물어 가고 다시 겨울이 다가왔다. 11월 23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귀퉁이에 “월세방 못구해 노숙 5일째, 40대 가장 뇌졸증으로 숨져”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학익2동 수정식당 옆 빈터에서 방을 구하지 못해 노숙하던 김상선(41·무직)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씨의 부인 최미라(44·식당 종업원)씨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월세 10만원에 인천시 주안동 263 옛 철도 관사의 방 한칸을 구두계약, 입주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입주하는 바람에 인근 주안1동 파출소 옆 빈터에서 5일간 노숙해왔다.……

이것이 1990년 현재 대한민국 도시빈민의 주거현실이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세입자문제

6공화국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공언하며 2백만호 주택건설에 들어갔다. 주택건설은 안정된 택지공급이 전제조건인데 이를 위해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택지개발지역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중 특히 서울 근교의 신도시 건설은 계획발표 단계부터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89년을 지나면서 가옥주나 지주들의 저항이 무력화되고 나서 올해는 세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전면 부각되었다.

분당, 일산, 수서, 일원, 방화, 평촌, 부천 중동 등지의 세입자들은 서울에서 밀려난 빈민들이다. 서울에서의 80년대 합동재개발 사업은 도시빈민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부유층과 중산층을 위한 고급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빈민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저렴한 방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서초동 등지의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또 다른 산동네로 이사해야 했다. 그런데 얼마남지 않은 산동네, 예를 들면 봉천동, 금호동, 삼양동의 산비탈 작은 방 하나도 5, 6백만원, 조금 넓은 살림방은 8백만원을 넘는 실정이어서 가진 것 없는 빈민층에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노동이나 행상 등 일은 서울에서 하면서 서울 외곽으로 쫓겨난 이들은 전세 1백만원 안팎, 월세 3만원 정도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이들에게 신도시 개발은 철거로 인해서 또 어디론가 쫓겨가야 한다는 악순환을 연상시킬 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갈데가 없다. 더 외곽으로 빠져나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방값 비싼 서울로 다시 들어갈 수는 더더구나 엄두도 못낸다. 무허가 천막을 짓고 살 땅도 없다. 농촌에서 살 수 없어 구조적 이농굴레에 묶여 도시로 향했던 이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새벽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뚝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철거로 도시외곽으로 자꾸만 밀려났는데 그나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가족을 이끌고 어디에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게 된 이들 도시빈민들이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세게 저항해 나서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정부의 대책이 있기는 하다. 세입자들에게 해당지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입주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시기는 적어도 2년 이후이다. 그동안 이들은 대한민국 땅을 잠깐 벗어나 어디에 증발했다 2년 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택지개발지역 현지에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임시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조건의 핵심내용이다. 광대한 택지를 조성하면서도 이 요구를 수용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철거반, 깡패, 잔투경찰, 감옥 등을 동원해 이들을 폭압적으로 제거, 진압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꽃을 가꾸던 비닐하우스가 주거지로 변한 서초동 일대

꽃마을, 객골, 토끼마을……. 이름만 들으면 전원풍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곳은 강남, 강동, 송파 일대, 서초동,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등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주거지, 상업지역이다.

고층아파트와 호텔, 검찰청사와 법원 사이로 이제는 비닐하우스라고 부르기 힘든 천막들이 개딱지처럼 밀집해 있다. 검찰청사의 웅장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배경으로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응크리고 있는 비닐하우스 주거지역, 잘 대비되는 풍경이다. 집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닐하우스는 원래 꽃을 기르던 곳을 판넬이나 합판으로 가로막아 바닥에는 새마을보일러를 들이고 지붕과 벽을 축사에 방한용으로 둘러치는 거무튀튀한 솜뭉치(?)를 덮어 놓은 곳이다. 비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런 곳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서초동 일대의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가 약 1만 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또 이러한 형태와 유사한 주거지역이 서울 근교 위성도시에 확장되고 있는 조짐이다.

이것은 현재 도시빈민들의 주거현실을 응변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산업사회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심각히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걸어온 과정 속의 구조적 결과물이고 몇십년에 걸친 우리 현대사의 산물이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5공화국 시기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있다. 80년대 철거 재개발의 희생양이 된 도시빈민들은 아파트 딱지를 노리는 투기꾼으로 어이없는 지탄을 받으면서 돼지우리와도 같은 주거지로 몰려들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 곳을 얻지 못한다면,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땅 도시빈민들의 삶은 전체 덩어리로 보아 그런 한숨과 비탄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밀바닥에 살

아도 놀고 먹지 않으며 부지런히 일하는 참다운 건설자들이다. 비록 비합법적인 주거공간에 살아도 이들의 삶은 끈끈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보다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편에 서있는 이 정부는 서초동 주민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끊임없는 철거위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으로 주민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다.

이 지역 중의 일부인 객골마을과 정보사마을(서초3동 967일대) 96동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871가구가 지난 8월 26일 강제철거되었다. 이 철거는 한달 전쯤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간지에는 서초동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대책은 진정한 것이 못 되었다. 주민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짓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10점을 가산해 준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백점 만점으로 가족수, 거주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사람부터 입주시키는데 10점은 철거민 등에게 줄 수 있도록 원래 배려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놓고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입주 할지,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다고 소문을 유포한 것이다. 더욱기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은 매년 바뀌는데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였다. 또 무조건적인 강제철거를 하면 당장은 어디가서 산단 말인가?

8월 28일, 공무원·철거반원·전투경찰 등 약 4천여명과 짐을 끌어내 신고 갈 화물차량 1백여대를 동원한 강제철거에 주민들은 저항해 보았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후 주민들은 길거리와 서초전철역 계단에서 노숙하며 한달을 지냈다. 야당 당사도 찾아가 보았고, 사회각처에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정의 시선과 동시에 또한 무관심이기도 했다. 이들은 해방이후 최대라는 폭우를 집도, 지붕도 없이 길거리에서 겪었다. 짐도 이불도 젓고 감기와 폐렴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속출했다. 이들은 결국 9월말, 추석을 앞두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짐들을 철거반원들이 실어가 양재나 전(前)거주지 동사무소 등에 갖다 버림으로 해서 짐들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10월 15일 밤, 객골마을 건너편의 검찰청사 앞 비닐하우스에서 이춘원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살이에 대한 한을 품고 음독자살했다. 이씨는 아들인 이 동 씨가 대학재학시 강제입영 당해 의문사한 이후, 아들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협의회 회원이 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유서에 아들 죽음의 진상을 죽어서라도 밝혀보겠다고 했으며 자신의 못난 죽음을 빙민장으로 애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장례는 경찰의 치밀한 공작으로 서초동 빙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튿날 밤 11시, 야음을 틈타 고향인 전남 고흥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정부주택정책의 문제점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문제의 심각성은 좁게는 주택정책의 잘못에서, 넓게는 전체 경제정책의 잘못과 구조적 과행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선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이 철저히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방식을 취해 왔다는 점이 잘못이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고 팔므로써 돈벌이를 하게하는 주택공급 체계가 문제라는 것이다. 얼핏보면 그게 왜 잘못이냐는 반박이 나올 법한데, 그 논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라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견해다. 그러나 집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집이란 땅이 없이는 짓지 못한다. 그런데 땅은 제한되어 있다. 땅은 생산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골고루 나누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도 토지공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대부분의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이 공공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정에서이다. 공공주택정책은 한마디로 이윤을 바라지 않고, 따라서 사(私)자본가가 아니라 국가가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공공주택이야말로 주택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건설회사가 고급 대형아파트를 지어서 팔아 돈을 버는 사업은 그냥 '장사'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공공 주택정책이란게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이제 영구임대주택을 92년까지 25만호 짓겠다고 나름으로써 그나마 정책이란 걸 내놓은 셈이다.

이상은 공급측면에서 본 것이고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구조의 일그러진 모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주택을 건설해도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넘쳐 흐르는 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않다. 수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밀려들어 오고 있다.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평균 40~50만명의 이농인구가 발생했다. 이토록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이농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지경이다. 농촌에서 아무리 밭벼등쳐보았자 살 수가 없었기 때-

문이다. 이른바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발전 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한, 즉 농촌을 먹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경제정책이 취해지지 않는 한 궁극적 해결책은 없다. 따라서 주택문제의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도농간 격차를 없애는 것과 관련된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주택정책, 즉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 25만호의 영구임대주택으로는 미봉책 밖에 안 된다. 서울에는 그중 8만채가 지어질 계획인데 입주대상자가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무주택 노동자, 도시빈민에게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 문제에 대한 제도적개혁이 되어야만 한다. 임대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실태파악부터 제도화해야 한다. 무려 20조에 가까운 임대료가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우리 나라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문제는 곧 토지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투기는 토지의 독점적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독점자인 재벌들로부터 생산활동에 불필요한 모든 토지를 환수해 국유화해야 한다.

1990년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개요

90년 11월 6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 철구조부 용접공 김규성 씨가 마을 뒷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김규성 씨는 86년 작업 중 다친 상처가 낫지 않아 고민해 왔다고 한다.

현재 기독병원에는 서용선, 정명섭, 강희수, 김용운, 조병호 씨 등 모두 다섯 명이 이황화탄소중독으로 1년이 넘게 입원해 있다. 원진레이온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신체마비와 정신장애로 보호자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이 언제 퇴원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치의 병에 걸린 이들에게는 병원조차도 무력하기만 하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산업재해—직업병 문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일반적인 살인이나 폭력에서처럼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운수탓으로 돌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조차 모른 채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공정에서, 같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반복성 재해로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운수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이다.

수은증독에 의해 목숨을 잃은 15세 소년 문송면 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은증기가 가득찬 작업장에서 수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하다가 급기야는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의 공식통계로 보아도 1년에 2,000명 가까이 죽어가고 13만여 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산업재해와 8,000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직업병문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문제이자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죽음이나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 잃거나 폐인화 되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폐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자는 이러한 기본권이 박탈당한 채 항상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이것이 비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개괄

지난 8월 노동부에서 밝힌 90년 상반기 산업재해 실태는 가히 경이적인 것이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경우 89년에 비해 42.9%가 증가한 1029명(89년 같은 기간 720명)이고 산업재해 노동자 총수는 3.2%가 늘어난 6만 4751명(89년 같은 기간 6만 2761)이었다. 우리의 형제자매이자 이웃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공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5.6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표1〉 참조).

물론 이러한 산업재해의 수치는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88년 조사에 따르면 산업재해건수의 15%만 노동부에 보고될 뿐 85%에 이르는 대다수의 산업재해는 회사가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고 치료비만을 물어주는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표 1〉 90년 상반기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업종별/구분	90년 상반기	89년 상반기	증가율	90년 일일사망자
제조업	303명	202명	+50%	
건설업	262명	181명	+44.8%	
광업	210명	150명	+40%	
기타	254명	187명	+35.8%	
총계	1029명	720명	+42.9%	5.6명

이러한 산업재해의 원인은 대부분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 미비로부터 기계장치의 부적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자본가가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9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89년 통계를 인용해 살펴보면 전체 산업재해 사고의 16.0%인 2만 2612건이 작업환경의 결함에 의해서, 6.3%는 안전방호장치 결함, 2.5%인 3330건은 복장보호구의 결함, 12.2%인 1만 6368건은 생산공정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망자의 56.2%에 달하는 969명이 안전지식의 불충분이나 작업방법의 교육불충분 등의 교육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노동부발행 89년 노동재해 분석).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산업재해 – 직업병은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90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구속된 사업주가 없을 뿐 아니라 유해 – 위험작업의 경우 시행령을 개악해 작업시간 단축을 의무화한 작업종류를 기준의 10종에서 잠수 – 고기압 작업 1종으로만 그 범위를 축소하여 노동부마저도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작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유해 –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유해작업의 범위 축소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그 동안 사업주들이 돈이 많이 드는 작업환경개선 노력을 기피한 채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해 – 위험수당만을 지급해와 작업환경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노사간에 유해 – 위험 수당이 초과 근무수당을 둘러싸고 분규가 빈발하자 기업가의 요구에 따라 유해 – 위험작업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90년은 산업재해의 증가와 함께 카드뮴중독, 망간중독 등 새로운 직업병 환자가 발견되고 유리공장에서 진폐증이 발견되는 등 직업병 환자가 보다 폭넓게 나타난 한 해였다. 전기통신공사의 정태문 씨 납중독 사망사건과 비파괴 검사 방사선 피폭환자 송영홍 씨 사망사건, 대우조선 김규성 씨 산업재해 비관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표 2〉 89년 직업병 유소견자 현황(단위 명)

질병별/구분	계	남	여
총수진노동자	3,467,135	2,339,939	1,127,196
직업병 유소견자	7,568	7,349	219
진폐(광업)	3,399	3,366	33
진폐(기타)	538	526	12
진동신경염	2	2	
난청	3,410	3,256	154
유기용제중독	21	16	5
특정화학물질중독	160	156	4
연중독	27	20	7
기타직업성질환	11	7	4

* 이 표는 89년 실시된 노동자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집계한 것임

이와 함께 90년에 보고된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공장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 전국토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탄공장 주변 주민의 진폐환자 발생(부산 부일연료 주변 거주 박창근 씨 사건)은 물론 서울시가 7월 발표한 대기오염 측정자료에는 구로, 쌍문동, 성수동, 오류동 등지의 아황산가스 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 질식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국회보사위의 요구로 국회에 제출된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는 공단지역 뿐 아니라 전국토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따이이따이병 등 각종 중금속 질병이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제련소가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경우 일반 농지의 81배나 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으며, 경북 칠곡군의 경우 자연토양에 비해 90 배가 넘는 421.9ppm의 납이 검출되는 등 이연,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이 모두 기준치를 훨씬 넘게 검출되었다. 공장에서 안전관리 미비가 낳은 이같은 결과는 바깥이 아닌

공장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산업재해—직업병 유형별 사건 사례

가. 중금속증독

● 정태문 씨 남중독 사망사건

정태문 씨는 전기통신공사 혜화전화국 선로공사과 직원으로 69년 입사 때부터 땅속 맨홀에서 전화케이블을 남anno으로 연결하는 일을 해왔다. 74년 작업 중 남증기를 많이 들여마셔서 처음으로 남중독 증세를 보인뒤, 근 16년간 시달려 오다가 90년 10월 21일 결국 숨졌다. 84년 남중독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정씨는 1년을 요양하고 병세가 호전되지도 않았는데도 면직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출근해 오다가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전기통신공사는 정씨가 사망하기 5~6개월전부터 파문을 축소하기 위한 장례대책만을 마련할 뿐 정씨의 병세호전을 위해 시설이 좋은 병원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요구는 무시해왔다. 결국 정태문 씨의 죽음은 병기를 1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사규로 인해 강요된 근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중독은 중금속증독 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14명이 발생하여 연평균 발생수준인 50~60명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남을 다루는 유해 사업장 가운데 80% 이상이 남중독을 판정하는 의료 기관의 특수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보고된 남중독 환자수보다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 오리엔트전자 집단 수은증독 사건

88년 문송면군의 수은증독 사망사건으로 잘 알려진 바 있는 수은증독이 서울 구로 공단 내 오리엔트전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안향자 씨 등 4명은 만성두통, 불면증, 팔다리가 떨리는 등의 수은증독 증상을 보여왔으나 회사측이 요양신청서에 회사측 기록사항을 해주지 않아서 집단적인 항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밀진단을 받고 공식적으로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내었다(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은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모든 직업병이 업무

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다). 오리엔트전자는 88년과 89년 특수검진은 물론 작업환경측정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남부지청에 약식 기소되기도 한 회사로 노동자가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같은 수은 증독을 밝혀낸 것이다. 이로써 오리엔트전자의 수은증독 노동자는 지난 2월에 발견된 2명까지 포함하여 총 6명이 되었다.

● 기타

- 망간중독

올해 5월 충북 영동화학공업사 박도용 씨 등 5명이 국내에서 처음 망간중독 환자로 밝혀졌다. 이후 노동부가 망간전지 제조업 등 작업공정에서 망간을 취급하는 전국 27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각종 안전장치가 부족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환경조차 측정하지 않는 등 1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망간에 중독되게 되면 정신병과 언어장애와 하반신마비 등의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는데도 건강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곳이 21개소나 되었다.

- 크롬중독

대우자동차 인천공장 주조부 노동자 2명이 일명 코뼈구멍병으로 알려진 비중격천공 환자로 보고되었다. 주로 도금업체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롬중독은 89년 전체 도금노동자의 31.7%가 중독증세를 보인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었다.

나. 진폐증

진폐증은 우리나라 직업병환자의 72%가 넘는 6000여 명이 앓고 있는 가장 많은 직업병이다. 지금까지 광산노동자들의 진폐증이 가장 많으며 실제로 9년 이상 일한 광산노동자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는 광산에서 채탄작업이 습식이 아닌데다가 환기, 통풍, 방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희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다. 현재는 광산뿐 아니라 고선해체작업, 용접공, 도자기공장, 유리공장, 심지어 공장밖 주민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 신아유리공업사 진폐증 보고

신아유리 배합부에서 13년간 일해온 조병한 씨가 지난 9월 유리공장에서는 처음으로 진폐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77년 입사 후 이 회사에서 유리가루와 소다, 봉산, 망간 등 20여종의 약품을 배합해 화장품병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부산지역 진폐증 발견

부산지역 유해업소 300군데에 대한 90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16명이 진폐증 유소견자로 밝혀졌다. 이와 달리 부산시 부일연료연탄공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박창근 씨가 지난 5월 진폐증진단을 받았다. 이로써 공해에 의한 진폐증 환자는 87년 서울 상봉동의 박길래 씨 등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되었다.

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인견사 제조공장인 원진레이온에서 올해 또다시 16명이 이황화탄소중독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87년 처음으로 이황화탄소중독이 보고된 이래 이제까지 총 61명이 이황화탄소중독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중독환자로 판명된 김종선 씨(방사과 휴직 중) 등 16명은 1년에 두차례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특수건강검진을 85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업주의 유해·위험작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소홀함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16명 중 2명은 몇개월 전에 휴직한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은 모두 퇴직한지 5~14년이나 지난 사람들이어서 환자가 보고되는 방사과와 후처리과에서 퇴직한 사람을 모두 다시 정밀검사할 경우에는 이황화탄소중독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이황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감정장애와 고혈압, 말초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당뇨병과 뇌신경에 장애를 가져와 언어장애, 안면신경마비, 반신마비, 전신마비 등 중풍의 증상과 정신이상 증세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목숨까지 잃는 불치의 병이다.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에 의한 피해는 비단 공장 안의 노동자뿐이 아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90년 10월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 노동자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82%가 신체의 이상을 호소하고 자신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에 따르면 TV언제나가 다른 동네에 비해 빨리 삭고 철대문 역시 일이년도 안 돼 부식되어 버린다고 한다. 또한 원진레이온은 원진레이온 앞 철길이 심하게 부식되자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해 이황화탄소가 얼마나 독성이 강한 물질인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라. 비파괴검사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피폭으로 추정되는 사건

10년 전 공사현장에서 비파괴검사작업을 하다가 방사선을 과다하게 써어 치료를 받

아오던 임석빈 씨가 지난 8월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철물제품의 비파괴검사업체인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던 중 실수로 방사선을 과다하게 써어 85년까지 4년간 회사측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올 봄에는 비파괴검사시 방사선에 노출되어 손끝이 썩어 결국 절단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가 알려지고 있으나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대로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신문보도에는 중앙의대 전재명 교수 등이 최근 몇년간 상당수의 피폭환자를 치료했다는 등의 기사들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사선피폭 환자가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9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의 기형아 출산이 방사능 때문이 아닌가하여 사회를 놀라게 하였고,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4년간 보수요원으로 일해 온 20대의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해 작년에 보고된 젊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들의 암사망 사례와 함께 이것이 방사선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 방사선에 의해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백혈병 발생의 원인 중에 방사선피폭이 첫째가는 유발요인임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암발생을 보다 높은 가능성, 즉 방사선피폭에 의해 온 것에 아닌 다른 이유를 찾으려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다.

마. 피부병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 직업병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질환이 직업병 천국인 우리 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가 80년부터 88년까지 고작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직업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어서 노동자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근무하는 도장공 김상필 씨 등 3명이 공식적으로 노동부에 직업병 요양신청을 냈다. 이들은 4년 전부터 손바닥에 습기가 없어지고 겉 가죽이 갈라져 속살이 드러나면서 칼로 벤듯한 통증을 느껴왔다고 하는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작업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의한 피부병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각구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청소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원 10명 중 1명꼴로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부병이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바. 안전사고

많은 산업재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안전사고다. 올해 산업재해－직업병 사망자의 대다수는 안전사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작업을 강요당하며 작업을 강행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 5월 한국콘베어 노동자 송낙필 씨가 울산 현대자동차에 출장을 나가 콘베어 설치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440V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송씨는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너비 20cm의 작업대에서, 실내온도 섭씨 40도의 찌는 조건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감전된 용접기에는 안전피복이 써어 있지 않았고 작업을 마치기 도 전에 440V가 흐르는 호이스트가 가동되었다고 한다. 또한 현장에는 안전관리 총책임자가 있었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강민호 씨가 기계에 휘말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맨홀가스에 질식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같은 달 문경 봉명광업소에서는 간안의 메탄가스에 의해 3명이 질식사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건설업은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홍화공업의 경우 대구 월성주 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7월 노동자 김시성 씨(농아자)가 지하실 거푸집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의 안전조치미비로 감전사한 것을 비롯하여 8월에는 김문호 씨 등 3명이 비계가 무너지면서 추락사하는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업체는 이후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최근 11월에는 풍산금속 안강 공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13명이 전신 중화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안강공장은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폭발－화재사고로 5명이 숨져 반복성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사고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섬광탄을 제조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위험물의 보관)를 위반하여 적정량 이상을 작업대에 올려 놓고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 그외 직업병

진폐증이나 수은, 납증독과 같이 잘 알려진 직업병 이외에도 아연도금공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카드뮴증독이나 신발공장, 페인트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기용제

증독, 우레탄 수지 건강장애,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병의 종류는 많다. 이중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는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에서와 같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른 직업병에 비해 별로 거론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유기용제의 하나로 보다 독성이 덜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리콜로로에틸렌의 경우, 다른 노동자의 54%가 중독임이 금속노련과 노동과건강연구회에 의한 공동조사에서 밝혀졌으나 그 후 재 조사가 없어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현재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 산업재해노동자 비관자살 사건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고 난 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비관자살을 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87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경인국도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 해 11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김성애 양이 투신자살을 한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및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그다지 향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비관자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탄광 일을 11년간 해 온 이용호 씨가 진폐증에 걸려 문경병원에서 요양해 오다가 10m 아래 병원 마당으로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8월에는 강원도 중앙개발 광부 강사남 씨가 작업도중 허리를 다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산업재해처리를 미뤄오자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1월에는 거제 대우조선 김규성 씨가 산업재해 입은 상처를 회사가 성의있는 치료를 해주지 않아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자, 이를 비관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비관자는 물론 일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좌절감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나 집계조차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자.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병

현재 의학발달의 수준이나 연구의 미진함, 직업병 인정기준의 부재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암의 경우 작업조건이 보다 나은 미국에서는 매년 전체 암환자의 4% 가량인 2만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명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 크롬이나 전리방사선, 벤젠, 비소, 타르, 석면 등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가 10~15년 뒤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암의 발생을 개인적 습관이나 유전적인 것 등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다. 85년 석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성중피증이라는 암환자가 100여 명 보고되었으나 역학조사가 되지 않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도 있다.

그밖에도 중량물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직업성 요통의 경우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추간판탈출증(소위 디스크병) 이외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하고는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요통이 악화된 계기가 작업중에 다치거나 빠끗했다는 식의 증명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릎관절의 통증이나 손목의 쟁그리운동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병은 그래도 직업병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 라도 제기해본 부분이다. 산업재해가 일본의 5~6배나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공식 직업병 통계는 일본에 비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단적으로 직업병의 대부분이 전혀 조사도 연구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기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한 사람의 유기용제증독도 없다던 경인지역의 금속노련산하 작업장에서 54%가 중독이라고 판명된 조사보고를 보더라도 직업병은 절대다수가 밝혀져 있지 않다.

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대책

가.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우연적 실수나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는 불안전한 작업환경이나 생산체계에 의해 발생한다. 그것은 앞의 여러 사례들과 대다수의 산업재해가 안전교육 미비 등의 교육적, 관리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노동재해 원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 대다수의 산업재해가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올해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9년 현재 전국의 유해사업장 3만 3862개소 가운데 1만 961개 업체만이 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의 3분의 2인 67.6%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업재해—직업병을 단순히 개인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기업의 횡포와 정부의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제도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윤축적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가들에게 산업안전보건을 맡기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가들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도 사고가 발생한 후 보상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산업재해 예방을 결코 바랄 수 없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재정부담에서 위험작업중지 권한까지 기업주의 관리하에 두고 있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제도는 필연적으로 값싼 형식적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개선의 소홀함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충남대 예방의학교실의 〈근로자건강진단 실태〉에 따르면 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병원은 15~20%, 검진협회는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발견율은 일본의 1/4에도 못미치는 1.8%(일본은 9.4%)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업병 집단발병으로 문제가 되었던 원전레이온이나 후평공단 등은 모두가 작업환경 측정을 대학의 연구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부 시정을 권고하거나 심지어 양호하다고까지 나온 것을 볼 때 기업가의 편의대로 제반 산업안전 조치가 왜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산업안전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작업상 다루는 물질이나 작업환경에 대해서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명백히 위험작업일 경우에는 이를 중지 할 수 있는 위험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같은 권리와 제도는 이미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밖에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산업재해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정착도 문제지만 사실은 현재의 부실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마 제대로 지켜진다면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지금에 비해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못한 이 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매년 엄청난 생명이 죽고 다치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년 1조 8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가 제한된 인력을 그나마 관료적, 행정적 업무방식으로 투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못